

불가피하고, 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심에 있어 왔던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일 공조 시스템에 기초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동아시아에서의 부분적인 냉전 부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군비경쟁의 높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NMD와 T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갖는 함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은 NMD/TMD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북한위협론'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능력', '의도',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북한위협론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중심으로 그 동안 NMD와 TMD는 강대국들 사이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내외의 일반적인 인식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000년 9월 1일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NMD 배치 결정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였던 '스타워즈' 논란이 부시의 당선과 취임을 계기로 또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월 26일 외교안보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는 핵무기에 관한 한 세계를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고 싶다"면서 "공격적인 측면은 물론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며 NMD와 TMD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¹⁾ 부시는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사일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령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방어(ABM) 협정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한 지상 NMD 체계(알래스카에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를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해상과 우주 공간으로 변경하여 확대·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클린턴의 NMD 배치 결정 연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움직임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강화와 클린턴이 제안한 NMD(지상요격체제를 말함)의 대안으로 우선 해상방어체제를 추진하자는 주장의 대두이다. 미국은 2001년 미사일방어망 관련 예산 배정에서도 NMD와 TMD에 같은 비중을 두고 T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MD는 상대적으로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적을뿐더러 NMD 구축에 필요한 ABM 조약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분담하고 있고, 완제품과 관련 기술 수출이 용이하다는 점도 미국이 단기적으로 T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TMD를 강화할 경우 사실상의 NMD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1) The Oval Office, Press Release, January 26, 2001. [Http://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미일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TMD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방어가 가능하다. 전역고고도방어(THAAD)와 해상전역확대(NTW)로 이루어진 상층방어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보잉747기에 탑재될 레이저 요격시설 ABL(Airborn Laser)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지구적 해상 NMD(global sea-based NMD)는 지상NMD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쉽게 개발·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 TMD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별 어려움 없이 NM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상요격체제를 우주의 추적 센서와 우주요격체제와 연결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방어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함에 고성능 스탠다드 미사일(upgraded SM-3)을 장착하고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우주적외선센서(space-based infra-red sensor)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해상 TMD의 해상전역확대(NTW)Ⅱ에 초속 5km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하자는 것이다. 이륙단계 방어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선박을 적의 영토에 최대한 근접시키거나, 요격레이저를 장착한 항공기를 적 영토 밖에 배치함으로써 적의 미사일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이륙단계에 요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스타워즈'의 강력한 주창자인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밝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은 미국 본토는 물론 한국과 걸프 지역까지 포괄하는 '전지구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²⁾ 럼스펠드가 밝힌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의 경우 동맹국들보다는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맹국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클린턴은 'NMD(national missile defense)'를 주로 사용한 반면, 럼스펠드를 비롯한 부시 대통령과 관료들은 '미사일방어망'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는 지상요격체제 못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 해상 및 이륙단계 NMD를 면밀히 분석한 로드니 존스에 따르면 해상 및 이륙단계 NMD의 옹호자들은 ▲TMD 상층방어체제 과도평가 ▲TMD에 고성능 요격미사일 장착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외면 ▲예산 및 시간상의 제약 과소평가 ▲무기체계의 전략적·전술적 기능 전환에 따른 잠재적 비용 미고려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공화당과 헤리티지 재단이 요격미사일 배치에 제한을 둔 ABM조약의 개정, 혹은 파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³⁾

3. 미국의 동아시아 TMD 구축 프로그램과 일본, 한국, 대만의 입장

미국방부는 1999년 국방관계허가법(National Authorizatio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 한국,

2) Joseph Fitchett, U.S. Intends to Put Anti-Missile Shield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5, 2001

3) 해상 및 이륙단계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Rodney W. Jones, "Taking National Missile Defence to Sea", Council for a Livable World, October 2000. 참조.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들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들을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TMD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1999년 4월 의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TMD 구축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c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는 동아시아 TMD 구축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 이 보고서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직면한 미사일의 위협 수준 및 사거리, 지형적 특성, TMD 배치 시기, TMD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투관리 및 지휘통제통신(battle management/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BM/C³)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MD의 무기 체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일본 : 자율인가, 타율인가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TMD 개발 및 배치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7년 "전략방위구상 조사에 일본 참가에 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Japanese Participation in Research for the Strategic Defence Initiative)"에 서명한 이후 미국과 TMD를 공동 연구개발해왔다. 1993년 12월에는 미일안보협력위원회 산하에 TMD 연구개발을 위해 미일워킹그룹을 창설하였고, 이듬해 10월에는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미일공동연구팀(U.S-Japan Bilateral Study on Ballistic Missile Defence)'이 만들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직후인 1998년 12월에 NTW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TMD 개발에 참여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TMD 미일공동연구개발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의 TMD 구상이 2000년 9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기술적인 준비 부족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NMD 배치 결정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발표에 지장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TMD는 네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저층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PAC-3로 100개 이상의 발사대가 배치될 경우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상층방어 시스템으로써 6기의 THAAD, 4기의 NTW와 1기의 NTWII로 구성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PAC-2를 PAC-3로 대체하고 미국과 함께 상층방어체제인 NTW 배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이 THAAD나 해상지역방어(NAD)보다 PAC-3와 NTW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PAC-3는 개발이 완료되어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가능하고, 2007년 전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NTW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요격체제인 THAAD 배치는 미사일기지 건설 지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달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해상에 배치될 NTW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없이 배치가 가능하면서도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99년 8월 16일 해상 미사일방어체제 기술 미일 공동 연구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 서명으로 나타났다. 이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NTW 요격미사일의 핵심 부분인 센서, 2단계 추진체, 경중량 탄두, 동역학 탄두(kinetic warhead)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는 2000년 4800엔을 2000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또한 2000년 방위백서에서 "정부로서는 미국과 BMD에 관한 공동기술개발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득이 되는 것이다"며 "이와 같은 미일간의 협력은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기술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⁵⁾

일본의 TMD 참가를 놓고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TMD 미일공동협력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일동맹체제가 와해될 것을 우려해서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TMD가 일본의 평화헌법 및 재무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들은 일본이 원래 TMD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도 믿을만하지 못하고 개발·배치까지 추진할 경우 수조엔 단위의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안보 관계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일본의 저명한 군사평론가인 후토미 시바야마는 일본이 처한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이 이를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은 깨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는 일본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⁷⁾ 현재 '기술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생산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자위대는 관련 장비는 물론 정보와 지휘체계를 주일미군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단적 군사 방어 금지 조항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일본 국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 조항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⁸⁾

또 하나의 문제는 미일 양국의 NTW 개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NTW 시스템에 사용될 요격미사일은 스탠다드 미사일(SM)으로 이 미사일은 초속 4.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될 경우 사거리는 2,500km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은 NTW에 장착될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MCTR을 위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TW 요격미사일이 탄두 500km 이상, 사거리 1000km 이상이 될 경우 미사일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MCTR를 위반하게 된다.⁹⁾ 특히 중국은 일본이 과거 야만적인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플루토늄의 축적과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을 마친 일본이 NTW까지 개발할 경우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¹⁰⁾

5) Masa Takubo, TMD 미일공동개발과 동북아시아, 2001년 동북아 평화와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대회 발표 논문. p 3에서 재인용.

6) 위의 논문, p 4.

7) Doug Struck, Japan Divided On US Call for Missile Defence, Washington Post, February 8, 2001.

8) 일본은 1969년 설립된 '우주개발사업단법' 제 1조에서 우주개발에 있어서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Maeda, Tetuo, 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2001년 동북아 평화와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대회 발표 논문.

9) LI Bin, "BMD and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http://www.nautilus.org/nukepolicy/TMD-Conference/libinpaper.html>

10) 이러한 중국 측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GU Guoliang, "TMD, NMD, and Arms Control"

4) 이 보고서는 <http://sun00781.dn.net/spp/starwars/program/tmd050499.htm>에서 볼 수 있다.

(2) 한국, TMD에 한발 걸친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한국에 제안한 TMD는 다섯 가지이다. 저층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PAC-3(지상)와 해상지역방어(NAD), 7기의 PAC-3와 상층방어인 THAAD(지상)가 결합된 방어시스템, 25기의 PAC-3와 NTW(해상)이 결합된 시스템, 그리고 19기의 PAC-3와 NTWⅡ이 결합된 방어체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조차도 TMD가 한국에 효과적인 방어체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도 서울은 DMZ에서 불과 40여km 떨어져 있고, 남·북, 동·서 사이의 거리가 짧기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 TMD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고 있는 TMD 구성 체계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복잡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T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9년 3월 당시 국방장관인 천용택은 “TMD 전력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며, 주변국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능력이 없다”고 말해 TMD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국방부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국방중기계획은 TMD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형적인 조건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T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차기 유도무기(SAM-X)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SAM-X 사업의 기종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개량형인 PAC-3로 단일화될 것이 확실해져 사실상 T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PAC-3는 현재 TMD의 주력 무기체계이고 이지스함은 해상방어체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미사일발사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기를 도입·배치할 경우 실질적인 TMD 기능을 갖추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TMD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전투지휘통제본부가 필요한데,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정보 수집 및 지휘통제 기능은 주로 미국이 맡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NMD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고성능 레이더를 건설할 경우 한국은 물론 NMD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은 5개의 해외 레이더 기지 건설 후보지역의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TMD와 무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무기 도입이 대탄도미사일방어능력 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

(3) 대만, TMD에 참여해 미국의 안보우산으로

대만의 TMD 계획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미일동맹의 TMD에 참여하는 방안, 둘째 미국으로부터 TMD를 구입하거나 기술을 이전 받는 방법, 셋째 독자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구·개발·배치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만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http://www.nautilus.org/nukepolicy/TMD-Conference/gupaper.txt>; WANG Qun "TMD and US-China-Japan Cooperation" <http://www.nautilus.org/nukepolicy/TMD-Conference/wangpaper.html> 참조.

현재 미국은 대만의 TMD 참가 여부를 두고 중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 직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서는 “미국은 대만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 무기와 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대통령과 의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성격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개량형 방공망과 패트리어트 PAC-2를 보유한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 수준과 TMD 참여시 양안관계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어망 구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제안한 TMD 구성 체계는 12기 이상의 PAC-3, 11기의 해상지역방어(NAD), 전역고고도방어(THAAD), NTW와 이것의 개량형인 NTWⅡ 등 다섯 가지이다. 이것은 대만과 중국간의 거리가 175km에 불과하고 중국이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동시에 다방면에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제안한 대만의 TMD 체계와는 별도로 대만 독자적으로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점증하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개발 중인 크루즈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궤도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0년간 진행될 예정인 대만의 국가미사일방어 계획은 약 94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핵심적인 무기체계 구입과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만의 미사일방어망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TMD 참여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기술적 요소와 함께 ‘TMD의 정치학’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이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이 구축되더라고 중국의 다양한, 그리고 다방면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만의 TMD 참여는 TMD를 배치하여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기술적 판단’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TMD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산으로 들어가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4.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지난 2월 7일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조지 테넷 CIA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특히(specifically) 북한, 아마도(probably) 이란, 가능하게도(possibly) 이라크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증언했다.¹¹⁾ NMD와 TMD의 직접적인 명분이 북한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지 W 부시 역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가장 임박한 위협국가라는 점을 암시했다.¹²⁾ 적어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이며, 가장 임박한 미사일 위협 국가는 북한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 및 미국 내 비판론

11) Statement by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George J. Tenet before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n the "Worldwide Threat 2001: National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07 February 2001, p 3.

12) David E. Sanger and Frank Bruni, In His First Days, Bush Plans Review of Clinton's Acts, January 14, 2001.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MD와 TMD를 강행할 만큼 대단한 것일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 본토에까지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공격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 및 의도와 함께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거나 공격 위협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기하는 국내외의 많은 논자들은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capability)

1998년 7월에 발표된 런스펠드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년 이내에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고, 10년후에는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1년 뒤 발표된 CIA 보고서에서도 북한 미사일 위협을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뽑고, 가능한 빨리 BMD 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전력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 북한은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은 동결하고 있으나 이미 한 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가지고 있다.

* 북한은 이미 2,500-5,000톤 가량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반체를 가지고 있다.

*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현재 사거리 500-8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약 500개, 1,000-2,200km의 노동 미사일을 400-500개를 보유하고 있고, 사거리 2000km 이상의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사거리 6,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것은 이렇듯 '보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와 수천톤에 달하는 생화학무기를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도 인정하듯 위의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하거나 탈북자의 증언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냉전 시대 소련의 군사력을 과장함으로써 군비증강을 합리화했던 것과 유사하게 주적이 사라진 이후 북한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해온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본

격적으로 개발했다는 1990년대는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군수산업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과 인프라 붕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역시 검토해볼 문제일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탑재 가능한 중량, 정확도,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 18일 미국의 NMD 2차 요격 실험 일주일전에 공개된 미국과학자협회(FAS)의 북한미사일기지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학자협회에서의 노동미사일 위성사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 미사일 기지는 미사일 실험 발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지 못했다. 수송로, 포장도로, 연료 저장소, 직원 숙소 등도 없는 원시적인 기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 미사일 기지 시설의 위치가 발사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발사 시설은 발사대, 발사대 서북 방면으로 약 850m 떨어진 거리 및 방향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 서쪽 방면으로 500m 정도에 위치한 미사일 조립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시설은 이러한 양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보통 20번 정도,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20 차례 이상의 실험이후 배치되는 것이 상례인데, 북한은 93년과 98년에 두 차례에 걸친 발사 실험 밖에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기지 부근에 오히려 농촌 부락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고, 기지와 촌락 사이에 안보 경계선조차 없기 때문에 상시적인 미사일 발사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고 과학자협회 회장인 존 파이크는 한마디로 "쥐 울음소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마치 걸프전 당시 노만 스와르코프 장군이 수십발에 달하는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공격의 파괴력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스커드는 모기 같은 무기이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미사일 기지 분석 결과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더하면 북한미사일위협론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동결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루토늄 역시 이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기폭장치와 운반체를 비롯한 고도의 정밀 기술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북한이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위협론을 강조해온 CIA에서조차도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은 적어도 향후 수 년 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IA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화학무기가 장착된 탄도 미사일 위협도 존 몰러와 칼 몰러의 분석을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효과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탄두가 지상에 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고도에서 뿌려져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기술적인 정교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⁴⁾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화학무기를 운반할 만큼 중량의 탄두 탑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매튜 메슬손에 따르면 1평방 킬로미터의 개방된 공간에

13) 미국과학자협회(FAS)의 분석 결과 번역은 www.peacekorea.org에서, 영어 원문은 www.fas.org에서 볼 수 있다.

14) John Muller & Karl Muller,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Foreign Affairs May/July, 1999.

서 많은 살상자를 내려면 1톤의 신경가스나 5톤의 이피리트(독가스의 일종)이 사용해되어야 한다고 한다.¹⁵⁾ 그런데, 북한 미사일을 분석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¹⁶⁾, 노동 미사일의 경우 1000kg 안팎,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 SLV를 장착하지 않은 2단계 미사일은 사거리 1,500-2,200km, 탄두 중량 700-1000kg, 정확도 2-4평방km이고, 여기에 SLV를 장착해 3단계 미사일이 될 경우 사거리는 4000km로 연장되지만, 중량은 50-100km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CIA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5년에서 10년안에 미국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탄두 중량 수백킬로그램의 미사일이 개발하더라도,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CIA나 럼스펠드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탄두 중량, 생화학무기 저고도 분사 능력, 정확도 등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사거리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틸러스 연구소의 팀 세비지가 "사거리리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두를 가볍게 하는 것"라고 지적한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미사일 위협의 의도와 국익

일반적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여 이들 국가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고 체제 생존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의 체제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협상을 중심으로한 대응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¹⁷⁾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책 역시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가치 지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명제를 잊기 쉽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는 탄도 미사일이 안보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1999년 9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윌리엄 폐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유에 대해 "주된 목적은 안보, 즉 억지력(deterrence)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셀리그 해리슨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원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경제 문제를 놓고 협상할 때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¹⁹⁾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안팎의 논란은 이러한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북한은 강제국가'라는 '낙인론' 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무엘 샌디 버거 전 백악관

15) Ibid.

16) 이러한 자료로는 전성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전력의 실상, 통일시론 99년 봄호; Bruce Bennet, 탄도미사일 위협의 재평가; 이정민, 북한 탄도미사일, 문정인의 편역, 오름(2000) 등 참조.

17) 이정민, 북한 탄도미사일, p 267, 문정인의 편역,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 항공력, 오름, 2000.

18) Selig S. Harrison, The Missiles of North Korea: How Real a Threat?, Summary, World Policy Journal Volume XVII, No 3, Fall 2000, <http://www.worldpolicy.org/>

19) Ibid.

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의 점증하는 위협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라며 "이들 국가는 소련을 상대할 때 통용됐던 '억지력'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랜드연구소의 조나단 폴락은 "이러한 점증되지 않은 가정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어온 핵억지력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소용없다는 인식에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러시아 의회 국제관계 위원회 의장인 드미트리 로고진 역시 미국은 북한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포는 파리를 잡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다"며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NMD와 TMD를 강행하려는 미국을 날카롭게 풍자한 바 있다.²⁰⁾ 미국 상당수 안보관계자들의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강제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에게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국이나 일본의 냉전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중장거리 미사일로 이들 국가를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제국가들의 유일한 목표는 국제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말처럼²¹⁾ 미국이나 일본에 손상을 입히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체제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공할 보복을 즐기고 있을까? 북한이 이들 국가에게 미사일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을 하면 미국과 일본은 겁에 질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까? 아마도 미일동맹은 이러한 가당치 않은 협박에 선제공격으로 응수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결코 북한의 국익은 아닐 것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그럴 듯 하지만 극단적인 해석은 북한이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 기지에 미사일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채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느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북한이 남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일, 한미 군사 동맹의 지속적인 유지와 전진 배치 군사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 정부 스스로 강조하듯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이고 이 지역에 사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파월 독트린'으로 일컬어지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근간은 미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역에서의 분쟁에는 급격히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사활적 이해에 걸려 있는 지역에는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빨리 완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탈냉전시대 최고의 외교 목표 가운데 하나인 비핵산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상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미사일 위협으로 차단하면서 남침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백번 양보해서 미국이 겁에 질려 북한의 남침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는가? 최근 10년간의 군사비가 남한의 3분의 1 정도이고 경제력이 2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발상인가? 북한의 생존 전략이 적어도 남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자신은 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이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가정이 아닐 수 없다.

20) Steven Mufson, 'Rogue' States : Is It Reality or Rhetoric?, Washington Post, May 29, 2000.

21) Ibid.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북한의 능력, 의도, 국익 등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위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클린턴 집권 1기 국가안보회의(NSC) 관리 출신인 로버트 리트와크 우드로 월슨 센터 국제학 소장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 바 있는 클린턴이 NMD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깡패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²²⁾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는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냉전체제 이후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미일·한미군사동맹, 전략적 중심 축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군국주의와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안관계, 1990년대 동아시아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최근 한반도의 화해 무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NMD와 TMD는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얹혀 있는 동아시아의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신냉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동안보에 기초한 평화로 가느냐? 이에 대한 해답은 NMD와 TMD의 배치 여부 및 그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선 NMD와 TMD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자.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는 당사자이고 대만 역시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반면 이러한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가장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주요국가(major states)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과정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북한의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다. 미사일방어망 배치의 또 다른 열쇠, 즉 ABM조약 당사자인 러시아는 전술적 미사일방어망(TMD의 저층방어체계)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미사일방어망(TMD의 상층방어체계 및 NMD)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화해협력정책을 폐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주변국가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입장 차이는 NMD와 TMD가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중인 효율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배치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어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NMD와 TMD를 추진할 만큼 대

단한 것이 아니며,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같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NMD와 TMD는 주요국가들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 또 다시 공격용 및 방어용 군비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군비통제 및 비확산 정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 NMD/TMD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NMD/TMD가 야기하는 군비경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의 개발이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은 NMD/TMD 구축에 따른 군비경쟁의 초기 양태가 공격용 무기 개발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경제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일본이 NMD와 TMD를 보다 강력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경우 공격용 무기에 기초한 전략적 보복 능력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비경쟁의 속성과 그 역사를 들어다 보면 NMD와 TMD가 강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NMD와 TMD가 야기하는 군비경쟁의 중장기적 양태이다.

미국의 NMD구상과 우주의 군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NMD 구상이 72년 요격미사일시스템 구축에 제한을 둔 ABM 조약에 위반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핵탄두 폐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BM 조약은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 체결한 군비통제 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데 시금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이다. 냉전시대 미국과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핵균형 유지로 자국의 안보와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가 ABM 조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ABM 조약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자칫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미려간의 군비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보좌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rana.ru)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는 미국이 '스타워즈' 구상을 강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군비 지출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²⁴⁾ 러시아는 지난 80년대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스타워즈'에 맞서 추진한 전략무기 증강 프로그램을 재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인파르팍스 통신을 통해, 냉전의 종식과 함께 '포기했던' 전략무기 증강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계속 NMD를 고집할 겨우 중단된 전략무기 증강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²⁵⁾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이

22) Robert S. Litwak, A Look at...Rogue States, A Handy Label, but a Lousy Polic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0, 2000.

23) OGAWA Shinichi, "TMD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http://www.nautilus.org/nukepolicy/TMD-Conference/ogawapaper.html>

24) The Times, January 25, 2001.

25) The New York Times, February 6, 2001.

다. NMD와 TMD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도 2000년 8월 공동 연구 보고서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통해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 현재의 핵전력을 10배 가량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만약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약 2백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동식,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⁶⁾ <토론토 글로브 메일>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 하듯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선택도 없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주재 한 서방 외교관은 "중국인들은 수일 내에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공격할 것이며, 중국 군부의 강경파들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이용할 것"이라며 "미사일방어망은 4년 정도 지나면 미중관계를 결정할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²⁷⁾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은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비핵보유국가들인 남북한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는 일본 내의 핵무장론을 부추길 것이고, 이것은 또 다시 남북한에게 영향을 미쳐 견접을 수 없는 '핵무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NMD/TMD의 저지가 동아시아 비핵지대 및 공동 안보체제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 체제 강화→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동북아 신냉전 도래. 물론 냉전시대에 비해 이념적 대립의 성격이 상당 부분 이완되고 경제적 실익을 중요시 여기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은 강고한 군사동맹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분적인 냉전의 부활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혼난 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스타워즈'와 북한미사일의 함수관계

단기적으로 미국의 NMD와 TMD에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미사일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미국의 안보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주한·주일미군 등 미국의 아시아 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제기될 가능성으로 뒷받침된다.

올해 초 조지 W 부시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미중관계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큰 밀그림을 북한과 오랜 혈맹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함께 그려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을 '전략

26) The New York Times, August 10, 2000

27) Toronto Globe Mail, January 2, 2001.

적 경쟁자'로, 북한을 여전히 '깡패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은 21세기 북한의 생존전략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 시장 진출의 법적, 제도적 열쇠를 갖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경제 부흥에 필요한 재원·식민지 배상금의 형태든, 경제개발지원 형태든 - 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민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적 필요'와 '안보적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점차 드러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성 기조를 띠고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이들 국가는 향후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최대 난제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NMD와 TMD의 구축은 북한에게 심각한 '전쟁 공포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부시 행정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를 종용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침서를 제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인정했듯이 북한 미사일은 남침이나 주변 국가의 위협용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사일 포기는 북한에게 전쟁 억지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인 TMD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경우, 미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를 명분으로 북쪽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북한이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경우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야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물'인 이유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해왔으나, 미국이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기는 중국 역시 북한에 비해 정도는 덜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NMD의 배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억지력 무력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예정대로 2006년경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알래스카에 배치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15개 안팎의 핵탄두는 이론상으로 완전 무력화가 가능하다. 하나의 핵탄두를 요격하는데 3-4개의 요격미사일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TMD 배치 역시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고,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TMD 배치는 중국이 유지해온 전략적 우위마저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됨으로써

대만 통일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할 때, 부시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주석이 부랴부랴 만난 근본적인 이유도 NMD와 TMD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미, 미일동맹체제에 맞서 과거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쳐 부시 행정부의 '터프한' 외교안보정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 것인가?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북한과 중국의 대미 딜레마는 단기적으로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스타워즈'(NMD/TMD의 별칭) 계획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면서 협상보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타격능력의 강화 쪽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공화당은 클린턴이 최대 외교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는 94년 제네바 합의와 99년 베를린 합의에 대해 "악행을 보상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보상에 인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최대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가 지루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스타워즈를 계속 추진하려 할 경우, 북한에게 중장거리 미사일 포기하라고 설득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스타워즈가 북한을 구실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NMD와 TMD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NMD와 TMD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21세기 군사안보전략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이 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면 스타워즈 추진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미국은 그 동안 NMD와 TMD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미국은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란이나 이라크를 들먹이기에는 이들 국가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북한에도 훨씬 뒤쳐져 있는데다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스스로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부시의 입장에서는 스타워즈를 실현할 강력한 지렛대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혼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이를 계속 마다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탈냉전 시대 미국 외교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비확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데다가, 미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북한 위협론은 NMD와 TMD 구축을 위한 구실'이라는 음모론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최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NMD와 TMD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NMD와 TMD를 저지시키고 탄도미사일은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NMD/TMD는 '등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1대1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NMD와 TMD를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할 리 만무하듯이, 북한 역시 미국에게 NMD와 TMD를 중단하면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NMD와 TMD는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안보전략이자 미국 정책 결정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NMD와 TMD가 야기하는 안보위협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NMD/TMD의 포기가 북한체제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스타워즈'와 한반도의 딜레마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스타워즈' 구상이 우리와 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TMD에 불참 입장을 갖고 있고, 둘째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정부의 TMD 불참 의사는 말과 행동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과 한반도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에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위험성은 BMD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이 N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과 군사적 긴장관계간의 충돌로 대북포용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스포츠와 같은 덜 민감한 혼란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냉전구조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와 국내 보

수파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눈에 띠는' 성과가 업을 경우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 구상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NMD/TMD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및 북미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특히 NMD/TMD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우선의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동기가 적지 않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문제와 함께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NMD와 TMD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메커니즘은 남한의 군비증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으로 이어진다.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와 분단이 심어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되불러옴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대내적 압력과 상승작용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남한이 주변국가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주변국가에게 군비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 자원 고갈로 군사적 동맹체제와 무기의 현대화에서 뒤지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력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추구해 왔다. 이것은 탈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90년대 한반도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외교적인 교착상태와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BMD를 배치한다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체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북한은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B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북쪽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4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주는 섬뜩한 교훈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의 남북관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모한 체제 경쟁과 상호불신, 그리고 군비경쟁이 물리적인 충돌 못지 않게 엄청난 인간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5. 결론을 대신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NMD와 TMD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국경을 넘어 전세계 평화군축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남북한 정부와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과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강력한 구심적 작용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냉전 부활 조짐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부활의 구실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의 원심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 딜레마의 돌파구 :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

NMD/TMD와 관련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전략적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북한-미국, 중국-미국, 미국-러시아 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가지 유력한 대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적극적인 지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적대감은 가장 덜한 지도자이다. 더구나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문제와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중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불안이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의 최대 혼란인 미사일문제에 대해 '중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평화운동의 과제 : 한반도 평화운동의 국제화와 국제평화운동의 한반도화

앞에서 김대통령의 중재나 남북한 공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커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국정부의 한계를 인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개입이나 민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평화운동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평화운동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기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대단히 척박하다는 객관적인 한계가 크게 작용했지만, 운동진영의 관성화된 사고와 주체적인 역량 부족

역시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평화문제를 '한반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움으로써 국제연대활동을 양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NMD/TMD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평화적 대안으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동아시아 T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는, 오히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 차원에서도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NMD/TMD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평화군축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2월 17일 오전 세션

주한미군과 인권문제

주한미군과 여성인권

김현선 ·

제주인권학술회 제1회 학술대회

주한미군과 여성인권

김현선 (새움터대표)

I. 서론

나는 지난 11년 간 대부분의 시간을 기지촌에서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보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1990년 봄, 그 당시 유일한 기지촌여성운동단체였던 두레방¹⁾을 알게되기 전까지 나에게 기지촌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지촌여성운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기지촌매춘과 같은 군대매춘 및 미군에 의한 미군기지 인근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혼혈아동의 문제 등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백만명이 넘는 기지촌여성들이 미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²⁾, 지금도 기지촌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기지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내 앞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놓여 있었다.

기지촌은 한국의 땅이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라는 두 개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공창지역이다. 그리고 이 두 정부는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촌의 포주들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미군을 성병과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지촌여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오로지 한국 내에서 미군들의 지위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주둔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미군부대는 한국인의 폭력과 범죄^(?)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현병으로 하여금 매일 기지촌을 순찰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사 그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을 기지촌여성들은 "미군빼돌리기 작전"이라고도 말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현병들은 사건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해미군을 한국인으로부터 분리해서 부대 내로 안전하게 '빼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의 포주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 두 개의 정부가 기지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큰 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1990년대까지 '한미친선협회'를 운영하여 미군당국자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했는데 이것

1.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의 기지촌특수선교센터로서 1986년도에 개원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기지촌여성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기지촌여성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2. J. T. Takagi and Hye Jung Park, The Women Outside, PBS 1996.7.16.방영.

은 한국정부의 비공식적 외교채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포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 광업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기지촌을 관광특구로 지정받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외국인여성들을 성매매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발생한 엄청난 이득은 이들을 지역유지로 만들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정부가 기지촌을 통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기지촌의 포주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확고한 정치적·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을 "성욕이 왕성한 젊은 미군들의 성범죄로부터 순결한 한국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방의 군인"들로서, 그리고 기지촌의 포주들은 "지역유지"나 "성공한 재벌", 심지어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불리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촌여성들은 "양공주"나 "양갈보", "양색시"와 같은 혐오스러운 호칭으로 지칭되며 멸시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지촌여성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저학력인 여성들이며, 또한 "순결하지 않은" 매춘여성이고, 더구나 외국인인 미군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지촌여성에 대한 멸시에는 순결이데올로기와 같은 한국사회의 강한 가부장성과 심한 인종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기지촌여성들은 미군전용클럽에서 춤을 추고 술을 따르고 매춘을 하기도 하고, 매춘업소에 감금되어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기지촌에서 살아온 매춘여성들은 생계 때문에 예순이 넘어서도 미군을 상대로 이른바 히빠리매춘을 하며 살아야 한다. 매년 기지촌여성들은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폭행이나 강간범죄는 한국경찰에 대한 불신과 포주들의 압력에 의해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1992년 미군에 의해 윤금이씨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한국사회에 반미운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지촌여성들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지촌여성의 인권침해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심지어 인권운동가나 여성운동가, 여성학자들조차도 이 문제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미군주둔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지촌여성에 대한 살해사건이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안타깝게도 정작 기지촌여성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기지촌여성과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다른 문제"로 구별되어 왔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들은 "강제로 끌려갔던 것"이지만, 기지촌여성들은 "도덕관념의 부족이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과 멸시 속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치회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기지촌여성들을 효과적인 통제하기 위하여 기지촌에 자치회를 구성하고 후원하였다. 이러한 자치회는 지금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가출·접대·윤락 등 요보호여성 선도사업계획"³⁾에 포함되어 있으며, 몇몇 기지촌에서 그 명목을

3.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0), 47쪽.

"특정지역에 자치회를 구성하여 인권보호와 선도 접근 경로로 활용

- 정부의 선도보호시설을 소개하고, 입소인원을 할당·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 유인책 강구

- 여성회관 등의 기술교육, 취미교실, 교양강좌 참여유도

- 미성년자 고용, 음란·퇴폐행위 등을 자체정화토록 유도

- 특정지역(집결지, 기지촌) 중심의 정신·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유지하고 있다. 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지촌여성통제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지촌여성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회는 그 임원을 기지촌여성들이 담당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지촌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대학생들은 기지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억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지촌을 방문하고 기지촌여성들과 연대를 시도하였다. 1990년에 시작된 기지촌활동은 지금까지 12년째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기지촌여성을 "전쟁에서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학대"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미군주둔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고, 미군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기지촌의 여성들과 아동들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II.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문제-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1. 주한미군

북한 공산세력의 남침을 저지하고 남한 사회의 안정을 지켜주는 우방국의 든든한 울타리라는 평가에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점령군이라는 비판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이다.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군수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육·해·공군을 합하여 약 36,000명이었다. 이들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면적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1969년에는 4억 2,644만평이었다. 이 면적은 1970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감소된 바 있고, 그 후에는 소폭의 상승과 소폭의 감소를 겪으면서 1996년 말 통계로 볼 때 미군기지는 전국 96개소에 총 면적 8,025만평에 달하고 있다. 이 면적은 서울시의 반이고 인천시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전용지역-미군기지나 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4,172만평, 지역권지역-사격 훈련장 안전지대나 미군송유관, 수도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과 같이 원래의 토지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상용권을 행사하는 땅-이 1,027만평, 임시지역-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이 2,826만평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시설과 구역의 자산가치를 계산해보면 12조 6,300원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 중 73% 가량이 민·공유지이다.⁴⁾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1995년 아래로 매년 30억달러의 한국국민들의 세금이 미군부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최고 33억4천만달러의 방위분담금을 제공해야 했다. 1997년 이후 한국에는 경제적 위기가 닥쳤고, 달러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방위비분담은 한국정부에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⁵⁾

- 성병, AIDS 등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위안잔치, 자매결연 등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켜 선도 분위기 조성"

4. 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1999. 3), 15쪽.

2 주한미군과 기지촌

군대매춘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둔군지위협정이나 미국정부, 미군당국 모두 군대매춘이나 기지촌에 대하여 절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을 매매하고 대상화하는 기지촌은 미군기지의 중요한 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미군관료들은 미군의 성적행위가 자신들의 군대의 중요한 욕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국, 독일, 이태리에 주둔하는 미군의 기지촌들은 미국방성이 매춘을 미국군대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미군의 군함과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듯이 미군들은 미군기지주변의 여성과 소녀들로부터 재충전된다는 생각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미군관료의 견해에는 한국정부도 동의하고 있으며, 기지촌과 같은 미군을 위한 휴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고 관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지촌여성에 대한 정기적인 성병검진과 치료를 통해 미군들의 “안전한 매춘”을 보장하여 주었다.

가. 주한미군에 의한 군대매춘의 역사

기지촌의 역사는 한국매매춘의 역사이다. 한국의 매매춘은 일본제국군대에 의해 형성되었고, 미군대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러한 매매춘의 확산은 한국의 경제를 성산업에 의존하게 하였으며, 현재 매매춘현상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같고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 기지촌의 역사는 크게 여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제국군대 기지촌,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미군정, 한국전쟁 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⁷⁾

(1) 일본군대의 기지촌(~1945년)

첫 번째 시기는 일본제국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이다. 한국의 매춘은 일본제국군대의 조선진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지촌의 형성도 일본군대의 주둔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제도는 우선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고, 청일전쟁 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여 일본당국은 거류지에서도 자신들의 관행에 따른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표하였다. 일본군의 기지 주변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⁸⁾

5. Gwyn Kirk and Carolyn Bowen Fracis, Redefining Security: Women Challenge U.S. Military Policy and Practice in East Asia, Berkeley Women's Law Journal (15호 2000), 233쪽.

6. Gwyn Kirk(2000), 241쪽.

7.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새움터 자료집(1997), 10쪽.

8.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1994), 65쪽.

(2) 미군기지촌의 생성(1945~1950년)

두 번째 시기인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미군정시기는 미국식의 새로운 매춘문화를 이식하는 시기였다. 군정으로 시작된 미군의 주둔으로 전국 곳곳에 미군기지가 생겼고, 미군들에게 군대매춘을 통해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군관료들에 의해 급속도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일본군기지촌이었던 지역도 미군기지촌으로 적극 이용되었다. 기지촌에는 빈곤 때문에 다른 생존수단을 찾고 있는 많은 한국여성들이 유입되었으며, 그 주변에 미군과 기지촌여성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모여들었다.

(3) 미군기지촌의 확산(한국전쟁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이 시기는 기지촌매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시기이다. 한국전쟁이후 미국은 한반도 전역의 주요 도시마다 주력부대들을 진주시켰고, 따라서 전국의 곳곳에 미군기지촌이 형성되었다. 미국정부의 원조와 함께 기지촌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기지촌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가난한 기지촌여성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의해 미국으로 초청된 가족들은 미국이민자들의 1세대가 되었다.

(4) 기지촌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971년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기지촌정화사업을 요구하였다. 마침 한국정부는 미군감군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군철수설이 흘러나오다가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자 1960년대 말에는 약 6만2천명이었던 미군이 1971년에 2만 여명이 철수하여 4만5천 여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박정희정권은 미군당국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그전까지는 보사부에서 개인병원에 의뢰하거나 미군들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성병진료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의 기지촌에 성병진료소를 세웠다.

즉 한국정부가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기지촌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기지촌에 대한 정비의 요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급속도로 줄고 있고, 미군의 철수발표로 박정희정권이 위협을 받던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⁹⁾

한국 정부는 미군과 협력 하에 BCCUC (기지촌 정화를 위한 외무부 시행 기획)를 설립했다. BCCUC에서는 미군의 협조를 받아 기지촌의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기지촌의 매춘여성들에게 미군들을 상대할 때의 에티켓과 행동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¹⁰⁾ 또한

9. Katharine H.S. Moon,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Routledge(1998), 150쪽.

10 마이카 죠셉 애들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내 비정부 기구의 활동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한국정부는 BCCUC에 성병진료소와 낙검자수용소를 짓도록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관리 실시하였다.

일본군대도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성병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매춘여성에 대한 성병관리는 미국군대에 의해 이어졌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미군에 의해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진료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부터는 미군당국의 요청으로 아예 한국정부가 기지촌마다 성병진료소를 세우소 매주 성병진료를 실시하였다. 성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몽키하우스(낙검자수용소)'라는 수용소로 보내졌다. 기지촌여성들이 감금시설인 '몽키하우스'에서 도망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미군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사업이었을 뿐 기지촌여성들의 환경과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기지촌매춘에 깊숙이 개입하고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서 기지촌매춘은 공창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5) 기지촌산업형매춘(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다섯 번째 시기인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지촌에 '전통형 매춘'과 새로운 '산업형 매춘'이 혼재하게 된 점이다. 해방 후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해체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사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떠여 살기 위해서, 또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무작정 상경을 하였고, 역전에서부터 인신매매 조직에 걸려들면서 매춘을 하게되는 것이 1970년대 초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이나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촌이나 특정지역으로 유입되어 집단을 이루며 포주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매춘을 '전통형 매춘'이라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이 비공식적 노동부문 등에 제한되어 있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접객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경제구조의 불균등 발전과 상관없이 접객서비스업이 비대화되고 새로운 직종인 호스티스, 맛사지걸, 안마사, 면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면서 신종 매매춘이 늘어나게 된다.

기지촌에는 80년대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산업형 매춘'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기지주변을 강력한 개발규제조치로 묶어놓았었고, 기지촌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공창지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산업형 매매업소들은 기지촌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미국의 문화를 상품화하여 젊은이들을 기지촌을 끌여들였고, 한국정부에 의해서 기지촌에 제공되는 특혜중 하나인 무자료술을 암거래하였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한국남자손님이 들어난 것도 이 시기의 변화이다. 또한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아예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기지촌을 향락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전통형매춘 사례- 김OO)

8 학위(2000), 22쪽.

몇 번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어렸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다. 나이도 이름도 모른다.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같은 사람이 개울을 업어서 건네 주던 장면뿐이다.

그 다음 기억은 고아원생활이다. 고아원에서는 물을 많이 먹으면 밤에 오줌을 쌌다고 물을 주지 않아 목이 마르면 걸레를 짜먹었다. 고아원 원장은 밤마다 여자아이들을 불러내 강간을 했는데 나도 9살이 되었을 때 불려나갔다. 더 이상 고아원의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그곳에서도 망쳤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땅에 묻고 있었다.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상경하였다. 그때가 13살쯤인 것 같다. 서울역에 도착해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무료합숙소에서 자며 길거리에 있는 유리조각을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고 밥한끼 얻어먹는 생활을 하였다. 길거리에서 유리조각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 머리를 다쳤다. 무료합숙소는 서울역 근처의 거지나 갈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жив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한지 얼마 안 돼 옆에 자는 아저씨들이 나를 건드리고 강간했다.

그렇게 지내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가 먹을거를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여자는 서울역근처에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포주였다. 그 여자는 나를 계속 거리로 내보내 남자를 유혹하여 매춘을 하게 시켰는데 그 댓가로 내가 받은 것은 하루에 밥 한끼뿐이었다. 그 포주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고 그 때 집도 몇 채나 사는 걸 봤다.

그 여자가 포주일을 그만들 때 돈을 받고 나를 문산 기지촌에 팔아 넘겼다. 그때부터 기지촌에서 일하게 됐다.¹¹⁾

(산업형매춘 사례- 양OO)

우리 클럽은 미군전용클럽이지만 미군은 거의 오지 않고 한국남자들이 주로 온다. 단속 공무원들 몰래 돈을 많이 들여 노래방시설을 갖춰놓았고 안쪽에는 노름을 할 수 있는 작은 방도 있다. 한국남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이런 시설을 해야한다고 한다. 한국남자들도 기지촌의 술이 싸니까 요즘엔 많이 온다. 한국남자들이 오면 술을 팔고 매춘도 한다. 포주들의 말이 미군은 술만 마시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지만 한국남자들은 안주를 많이 먹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걸릴 위험은 별로 없다.

우리에 대해서는 매주 성병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만 클럽에 대해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¹²⁾

(6) 외국인여성 성매매(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섯 번째 시기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시작된다. 필리핀여성들로 시작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는 기지촌업주들의 모임인 한국특수관광업협회의 주도로 한국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그리고 기지촌의 포주들에게 모두 큰 이익을 주는 정책이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은 한국국민들에게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반미

11. 새움터자료집(1997), 11쪽.

12. 새움터자료집(1997), 11쪽.

감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후로도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살해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반미감정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반미감정에 미군관료들은 당황했고, 미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이것은 미군들에게 안전한 유통지역을 제공할 것을 미국정부로부터 계속 요구받아왔던 한국정부로서도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기지촌의 경기가 식으면서 한국여성들이 기지촌으로의 유입을 꺼리게 되었고, 따라서 포주들은 매춘으로 인한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3자에게 외국인여성의 성매매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배타적인 민족감정이 강한 한국인들은 같은 미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가 외국여성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또한 기지촌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들은 한국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여성들보다 적은 급여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청할 가족과 친구도 없는 외국이어서 포주의 억압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훨씬 쉬웠다.

이렇게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처음에는 기지촌 내의 업소에서만 종사하였다. 그러나 기지촌을 찾는 한국남성손님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고, 이러한 외국인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선호는 외국인여성들이 성매매되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백인여성에 대한 한국남성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러시아계의 여성들이 많이 성매매되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미국정부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보장하는 기지촌

(1) 미군기지 쌀유출사건

미국정부는 기지촌을 미군의 휴양을 위해 이용할 뿐만 아니라, 기지촌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에 경제적·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 예가 1991년 쌀개방을 앞두고 일어났던 “전국 미군기지의 쌀유출사건”¹³⁾이다.

1991년 봄, 한국은 한창 수입개방문제로 한참 시끄러운 시기였다. 특히 쌀개방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번갈아 한국을 드나들며 한국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전국의 미군부대에서 미군들과 그 한국인 부인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에 의해 엄청난 양의 쌀이 기지촌의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왔다. 용산, 동두천, 송탄, 부산 등 전국의 기지촌에서 미군 측의 단속없이 엄청난 양의 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 당시 국제결혼한 여성 한 사람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최대로 쌀에 대한 불법거래를 했을 때의 보통 한달 수입은 10만원 정도였다. 91년 봄에는 하루 수입이 10만원이 될 정도로 미국기지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엄청났다. 이러한 변화는 미제쌀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정부에 쌀개방압력을 넣기 위한 미군 측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주한미군 당국은 그간 미군 PX물품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 미군 한 사람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구매량을 제한하는 규정(RCP)을 두고, 규정위반자를 컴퓨터로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폈다. 그러던 미군 측이 1991년 5월 1일 미국방비 삭감으로 주한미군의 비용절감이 불가피하다며 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린 것이었다. 한국의 관세청에서는 미군 PX물품의 암거래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RCP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군 측에서는 “미군은 한국의 국방을 도와

13. 새움터자료집(1997), 13쪽.

주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다. 미군이 한국경제를 도와주기 위해 연간 7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RCP제도를 계속 운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측의 의견을 무시했다. 때문에 그동안 구매제한에 묶여 있던 미제상품들, 특히 쌀이 엄청나게 암시장으로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암시장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수입자율화와 관세인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즉 미군부대의 일련의 조치들은 PX물품의 불법유출을 수입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수입개방 이후의 수요확대를 노린 미국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산 쌀을 유출시켜 우리나라 미국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나아가 쌀수입개방 압력의 한 방편으로까지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군사기밀이라는 미군 측의 강변에 기가 놀려 주식인 쌀의 암거래마저 제대로 단속 못하는 한국정부의 무능력,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예속적 관계도 이런 미국정부의 정책을 거들고 있었다.

(2) 전쟁을 도발하는 미군

1992년의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부시 미대통령과 이종구 국방장관은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지촌은 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그것은 그만큼 미군기지가 미국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며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엄청난 수의 미해병대가 실제로 한국 내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1993년 초, 평택시의 송탄기지촌을 방문했을 때, 기지촌여성들은 곧 전쟁이 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끼나와에 주둔하던 미해병대가 오산 미공군기지로 옮겨왔다고 했다. 우리들의 눈에도 보통 미군들보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키가 큰 미군들이 엄청나게 미군기지로부터 기지촌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미군들을 상대하느라고 송탄기지촌의 클럽들은 문을 닫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북한을 위협하는 이러한 군사이동은 실제로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한국국민들은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 그 당시 실제로 미군대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다. 기지촌의 현상황 - 경기도를 중심으로¹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략 지난 40여 년 간 기지촌매춘여성의 총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측하며, 기지촌의 경기가 가장 활발했던 1960년대 중반, 대략 3만 명의 기지촌매춘여성이 있었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2만 명 선으로 감소한 후 계속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하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추세에 있다.¹⁵⁾

지금까지 전국의 기지촌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과 기지촌여성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혀 실시되지

14. 새움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도내 기지촌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경기도(1999), 5쪽.

15. 새움터(1997), 7쪽.

못했다. 다만 1999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새움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경기도지역의 기지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휴전선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미군기지가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내의 기지촌 지역은 크게 동두천시와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도에 이 기지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지촌 여성은 내국인 1,579명, 외국인 835명 등 총 2,414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클럽 등 비교적 공개적인 형태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사자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가능한 여성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경기도 기지촌 지역의 업소 및 기지촌 여성의 수(1999년 조사)

(내국인/외국인)

지 역	정부통계		실태조사		펩푸집 (여성)	밀집지역 (여성)	동거여성	합 계
	클럽수	여성수	클럽수	여성수				
동두천시	44	84	48	133	6 (31)	52 (260)	100	524
		133		250			90	340
평택시	38	150	82	545	5 (30)		270	845
		163		308			90	398
의정부시	16	56	18	90			110	200
		51		29			65	94
파주시	-	-	3	10			-	10
				3			-	3
합 계	98	290	151	778	11 (61)	52 (260)	480	1,579
		347		590			245	835

1980년대 이후 주한미군이 점차 감소하고 기지촌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지촌은 계속 축소되어 왔지만, 1997년부터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고, 동두천과 평택시 기지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다시 기지촌의 성산업은 번창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여성우선해고로 인한 여성가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직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의 기지촌들은 그 지역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지촌의 대표적인 예는 동두천시 보산동과 평택시 신장동의 기지촌이다.

우선, 동두천 기지촌의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윤금이, 이기순, 신차금, 이정숙씨 살해사건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미군범죄 외에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나, 살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지역의 기지촌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그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 산업화된 기지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지촌의 형태를 모두 정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동두천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띠지 않으며 미군과 한국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요즘 기지촌에는 한국남성들이 부쩍 늘었다. 단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남성들이 자유롭게 기지촌 업소에 드나들 수 되었으며, 기지촌의 한국인남성손님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동두천시 보산동과 평택시 신장동에서 가장 심각했지만, 안정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지촌도 단속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남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남성들이 기지촌의 클럽을 찾는 이유는 기지촌에서는 면세주를 팔기 때문에 술값이 싸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춘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남성손님들은 외국인여성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의 필리핀여성들보다 러시아여성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최근 2년 사이 기지촌에는 러시아여성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백인에 대한 인종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서, 한국인남성손님들은 “매춘행위를 통해 백인여성을 소유한다”고 느끼며, 이것은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며 특히 “백인남성”에 대한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기지촌 인근 지역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생기면서, 기지촌의 퇴폐적인 서구의 하위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지촌주변이 개발되면서 예전처럼 “주변이 미군기지와 논밭으로 둘러싸인 기지촌”은 거의 사라지고, 기지촌과 그 인근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3.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삶

가. 기지촌여성들의 생활

(1) 빚의 굴레

50대 이상의 기지촌여성들은 50~70년대 이후 30여 년 이상을 기지촌에서 생활해 왔으며, 대부분 처음부터 기지촌매춘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30대의 기지촌여성들은 처음에는 유흥업소로 유입되었다가 빚 때문에 매춘업소로, 그 다음엔 기지촌으로 팔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지촌을 다른 지역과 엄격하게 분리하던 정부와 사회의 통제가 상당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만큼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산업이 확산되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집결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나 이를 통한 집결지 포주들의 이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산업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분리된 형태의 기지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요구 때문이다. 미군의 안전한 향락을 위하여 한국인들과의 분리와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성병통제가 한국정부에 여전히 요구되고 있고, 한국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이러한 요구에 충실했다.

기지촌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빚의 굴레는 기지촌여성들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지촌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온갖 것들이 모두 빚으로 계산되곤 한다. 포주가 여성들을 사오면서 직업소개소에 내는 소개비·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나 인신매매범들은 포주로부터 성인여성

은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미성년자는 500만원정도의 소개비를 받는다.-도 빚으로 계산되며, 포주가 제공한 매춘을 위한 방의 선불 방세도, 업소에서 입을 옷과 방의 가구들도, 낙태비용도, 몸이 아파서 쉰 날에 대한 별금도, 모두 빚으로 계산된다. 소개비와 방값 등으로 처음부터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는 매춘업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들의 수입만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표면상의 월급과 실제받는 월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탈매춘을 시도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빚의 굴레이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여성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놓고, 다른 여성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강요한다. 만약 여성들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 포주들은 이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포주들을 대신해서 이 여성들을 찾아준다. 물론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20조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 유인 ·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 유인 ·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내지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춘여성들의 빚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무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빚의 예- 유○○)

나는 빚이 500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빚이 늘었는지 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클럽에서 받는 돈은 35만원이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미군에서 술을 많이 뺏어먹지 못해서 술값으로 포주에게 받는 돈은 거의 없고 팁도 아주 가끔 있다. 그래서 거의 매달 3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 방세만 20만원이다. 그래서 계속 포주에게 돈을 꾸어 썼다. 하루는 포주가 나를 불러서 가보니 클럽아가씨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포주와 친한 그릇장사가 와 있었다. 포주가 앞에 앉아서 그릇을 사라고 하는데 빚이 많아서 포주눈치를 보고 있었던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50만원이나 되는 비싼 그릇을 샀다. 내 방은 주방시설이 없어서 밥도 못해먹고 그 그릇도 필요없는 거였다. 그릇값은 또 포주에게 빚지게 될 상황이다. 이번 달은 큰일이다. 몸이 아파서 이를 빼겼는데 별금이 40만원이나 된다. 월급을 받기는커녕 계속 빚이 늘어가기만 한다.

(2) 기지촌여성들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전용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서빙, 술시중 등의 일로 서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 댄서나 웨이트レス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수입은 지역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 웨이트レス

40대 이상의 웨이트レス는 클럽 안에서 매춘을 하지는 않으며, 주로 서빙과 술시중, 청소 등의 일을 하며 20만원에서 3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하며, 미군들의 휴일에는 새벽 4시~5시까지 클럽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들 중에는 외국인여성들을 감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댓가로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월급을 4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매춘업소에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에서 매춘을 하는 히빠리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나이든 히빠리 여성들

그러나 60대가 넘어가면 클럽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이나 기지촌여성들을 대상으로 꽃이나 먹을거리를 팔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여성들은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기도 한다. 2000년 3월 11일에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던 서씨는 68세였고 목격자들은 밤늦게 서씨와 미군손님이 서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서씨는 새움터에서도 상담을 했었던 여성으로 생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해야했던 나이 든 기지촌여성이었다. 그 미군은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미군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이 사건도 미궁에 빠진 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 댄서

댄서들은 돌아가면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무대에서 춤을 춰야하며, 춤을 추지 않을 때에는 미군이나 한국인 남성 옆에서 술시중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들은 미군에게 “여자쥬스”를 사달라고 해서 매달 술을 150잔 이상 얻어 마셔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120~13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이 술을 한 잔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70만원 정도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화대의 경우, 매춘여성과 포주는 보통 40:60으로 나누는 데, 매춘업소에 감금되어 있는 여성들은 현금을 받지 못하고 장부에만 기록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몸이 아파서 쉬는 경우 “티켓값”이라는 별금을 내야한다. 티켓값이란 기지촌여성이 하루 영업을 안 나가고 자신과 지내는 조건으로 미군이 업소에 내는 돈으로 보통 20여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업소에 나가지 못하는 날도 이 티켓값과 동일한 액수의 별금이 계산된다. 즉 몸이 아파서 3일 이상 쉬게되면 나머지 날을 일을 했어도 월급은커녕 오히려 별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지촌여성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아파도 무리하게 계속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알콜중독으로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착취구조로 인해 업소에 유인되던 시기의 급여에 대한 약속과 실제 급여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빚을 갚고 업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 펌푸아줌마

‘펌푸집’이라고 불리는 전통형 매매춘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화대를 주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대부분 착취하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펌푸집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업소의 존재조차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한다. 1999년 1월 동두천시에서 살해당한 신차금씨도 이런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1999년 말의 조사에서 동두천시의 보산동에서는 모두 6개의 펌푸집을 발견하였고, 평택시 신장동에서는 5개 가량의 펌푸집이 영업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업소로 미군을 유인하는 일을 하는 50~70세의 기지촌 여성들을 ‘펌푸아줌마’라고 하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기지촌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된다. 기지촌의 거리에서는 한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거리를 서성이며 미군을 유인하는 이런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 계약동거여성들
미군들은 매춘 뿐만 아니라, 아내와 피출부의 역할까지 요구하며 기지촌여성들과 계약동거를 하기도 한다. 계약동거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동거를 하면서 미군은 그 댓가로 매달 일정한 돈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매춘형태를 말한다.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은 대부분 1년의 기한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보통 계약동거는 1년미만이며,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여성은 다시 기지촌의 업소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지촌여성들은 한 남자만 상대하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약동거를 선호한다.

나. 기지촌의 외국인매춘여성들

현재 전국적으로 기지촌의 매춘업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연변 등으로부터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그 중 대부분이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성매매되는 여성들이다.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브로커에 의해 모집되어 한국내의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는데,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의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다.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 1998년부터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여성들이 급증하는 것은 기지촌을 찾는 한국인남성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지원과 둑인을 통해 성산업이 점차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와 점차 심화되는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국가 간의 여성 매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해외 이주 노동을 원하는 동남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은 한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장려와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노동력의 이주는, 여성 인신매매 알선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더욱 부채질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한국의 매춘업소로 유입된 후 매춘, 강요, 화대 갈취, 폭행, 감금 등의 학대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외국인이라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여성들은 계약 내용과 다른 노동이나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일을 그만두려면 3,000~5,000달러의 계약 위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매춘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 이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니저를 통해서 다른 클럽으로 옮기거나 도망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업주가 여권과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 대부분이 클럽 안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망을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도망친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고, 한국 정부는 물론 필리핀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뿐이다.

다. 혼혈아동

기지촌여성과 미군사이의 성적관계의 결과로서 1945년 미군의 주둔 이후 많은 혼혈아동들이 태어났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혼혈인들은 특별한 낙인이 찍히는 계층이었다. 혼혈인들은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당해왔다.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이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빈곤에 고통을 겪는다. 학교에 들어가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 혼혈아동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전체 평균의 7배에 달한다. 학교교육을 포기함으로써 혼혈인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려고 할 때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함께 커다란 장애가 된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은 혼혈인이 택할수 있는 직업을 연예 계통이나 단순기능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뿐리깊은 사회적 편견이 혼혈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 가난하게 태어난 혼혈 아동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한다. 빈곤의 악순환이 혼혈인들을 옥죄고 있다. 결국 남성혼혈인은 범죄자가 되거나 여성혼혈인은 어머니처럼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혼혈인들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순수 혈통이라는 민족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존재로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민족 구성원으로 수용되기보다는 격리되고 소외되어 왔다. 외국의 남성, 특히 평소 극단적인 권력 차이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미군에 의해 손상된 한국(여성)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읽혀지면서, 혼혈인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부계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제와 수천년을 순수 혈통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혼혈인을 한국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기지촌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¹⁶⁾

현재 한국에는 약 1,000여명의 혼혈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에 50여 년 동안 태어난 혼혈인의 수는 훨씬 많지만,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입양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혼혈인의 대부분이 미군 기지 인근의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역시 한국 사회의 뿐리깊은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의 혼혈인들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기지촌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혈인들의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매춘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 역시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지촌에 만연한 군사 문화, 향락 문화가 혼혈아동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인 매춘여성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무국적자로서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극도로 소외된 상태에 놓여있다.

라. 미군범죄

기지촌여성들은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미군손님이나 포주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16. 김주영, 한국 기지촌의 혼혈인 실태와 해결방안, 자원활동가 교육자료집, 새움터(2000), 45쪽.

당하기도 하고, 강간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매춘여성들이 범죄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미국에서 매춘에 유입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4세이고, 적어도 75%의 매춘여성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며, 90%이상의 매춘여성들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고, 70%의 매춘여성들이 손님이나 포주, 다른 남자들에 의해 강간을 당해왔고, 매춘여성들은 매주 한 번 꼴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 캐나나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매춘여성들의 사망률은 무려 40배 이상이다. 하물며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에서 자유로운 미군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지촌여성들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68년과 1998년 사이에 ‘한국인 보호’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45,183명의 미군들이 39,452건의 범죄를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동안 미군들은 하루에 평균 2건의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강간, 절도, 그리고 육체적 학대와 같은 범죄는 기지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특히 강간과 성폭행과 같은 성적 범죄들은 피해자가 클럽 주인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위해 한국과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으로써 한국 시민에 대해 범죄행위를 일으킨 미군을 미국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미군이 일으킨 범죄 행위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으며 범죄자들 또한 처벌되지 않았다. 1953년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1967년에는 SOFA가 제정되었다. 표면적으로 SOFA는 그 전의 조약들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SOFA는 미국에게 미군이 관계된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한 사법권을 미국에게 주고 있었다.¹⁸⁾

미군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 항목은 SOFA의 제22 항이다. 비록 미군이 1967년과 1987년 사이에 39,452건의 범죄행위(45,184명의 미군에 의해)를 저질렀지만 단지 234건만이 한국에서 재판되었다.¹⁹⁾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미군 범죄와 관련된 한국의 재판권은 1% 미만이었고, 보다 최근의 자료인 1998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은 불과 3.9% 밖에 되지 않았다. 1991년에 비록 SOFA가 개정되었지만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본질적인 불평등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²⁰⁾

기지촌여성들과 인근지역의 여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발생한 미군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 신원미상 미군에 의한 임산부 폭행사건 (1988년 9월)

미군에 의해 임산부가 구타를 당하여 아이가 낙태되었으나 사건은 미해결 처리되었다.

17.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1999), 17쪽.

18. 마이카 죠셉 애들러(2000), 15쪽.

19. 운동본부(1999), 17쪽.

20. 운동본부(1999), 25쪽.

21.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 초등학생 3명 성폭행 사건 (1991년 1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찰스 유진 버쳐 상병이 집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을 지프에 태워 성폭행을 하는 등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년 10월)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윤금이씨가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케네스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199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4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15년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윤금이씨의 유족은 미국 정부로부터 7,1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 김○○씨 성폭행사건 (1993년 5월)

호프집을 운영하는 53세의 김씨가 존 로저 살로이스 병장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뇌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3,9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로저 상병은 1995년 1월에 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같은 해 8월 김영삼 정부의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 박○○씨 폭행사건 (1994년 1월)

미군속 월츠 월리(46세)는 결혼을 미끼로 관계를 맺은 박씨(25세)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태아를 유산시켜 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다.

▶ 김분임씨와 두 자녀 살해사건 (1994년 6월)

미 플로리다주 포트월튼 소재 자택에서 김분임씨(33세)와 두 자녀가 그의 남편 에드워드 자크레브스키 공군중사에 의해 살해된 채로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되었다.

▶ 조○○씨 성폭행사건 (1995년 5월)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일명 뱃벌) 야산 공동묘지에서 마이클 노웰 이병이 부대 근처 클럽의 종업원 조○○씨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성폭행하였다.

▶ 왕○○씨 폭행사건 (1995년 6월)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미군전용 로즈클럽에서 로버트 조제프 2세 병장이 종업원 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9바늘을 폐매는 중상을 입혔다.

▶ 천○○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대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이병이 천○○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96년 5월 베넷 빌리 이병은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형을 선고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 이기순씨 살해사건(1996년 6월)

1996년 9월 7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셋집에서 이기순씨(44세)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겨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작은 칼로 목이 반쯤 열리도록 잘라놓은 잔인성과 사건 장소가 미군기지 인근이라는 점, 군화 발자국 등으로 미군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범인은 미 제2사단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경찰에 의해 9월 11일 검거되었다. 뮤니크 이병은 징역 10년 실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기순씨 유족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1억7천만원의 배상신청을 냈고, 국가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9천만원을 산정하여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1997년 3월 28일 미군측은 이기순씨 유족에게 7천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확정 통보하였다.

▶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1996년 6월, 9월, 10월)

윌리엄스는 1996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 모군(12세), 최 모군(12세), 이 모군(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6년 12월 구속 기소되어 1997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는 항소하였으며, 1997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이○○씨 폭행사건 (1997년 5월)

이○○씨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동두천시의 한 여인숙에서 동거하고 있던 테일러 라이오넬 안토니오 병장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안토니오 병장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이 사건 이후, 이○○씨는 새움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직업재활센타에서 근무하였으나, 1999년 9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 이○○양 성추행사건 (1997년 5월)

동두천시 한 모씨의 집에 차니 트레일 일병이 알몸으로 침입해 한씨의 외손녀 이○○양(6세)을 성추행하다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1998년 1월)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주연씨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불에 태웠다. 제롬은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다.

▶ 신차금씨 살해사건 (1999년 1월)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의 방에서 신차금씨가 목이 졸린 채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건 현장의 벽에는 'Whore(창녀라는 뜻의 속어)'가 쓰여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에 대한 DNA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나타났으나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 이정숙씨 살해사건 (1999년 9월)

새움터 직업재활센타에서 근무하던 이정숙씨가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의 방에서 숨져있는 것이 3일만에 발견되었다. 당시 동거하던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한국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사인 불명의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 김성희씨 살해사건 (2000년 2월)

서울 이태원의 미군전용 아마존클럽 종업원 김성희씨가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건 수사 결과, 메카시 상병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정만씨 살해사건 (2000년 3월)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서정만씨(68세)가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전날 피해자가 한 미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직까지 용의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III. 기지촌여성운동

가. 자치회²²⁾

사회적 무관심과 멀시 속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기지촌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0년대 기지촌마다 자치회가 결성되자 이러한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정부는 기지촌여성들을 효과적인 통제하기 위하여 기지촌에 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지촌여성통제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지촌여성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회는 그 임원을 기지촌여성들이 담당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지촌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치회의 역할은 기지촌여성의 성병진료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였다. 따라서 자치회는 정부의 교육프로그램에 기지촌여성들을 동원하고, 기지촌여성들의 정기적인 성병진료를 감시하였다. 그러나 자치회의 임원들이 대부분 기지촌여성이었고, 기지촌여성들이 자치회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자치회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치회는 미군범죄와 포주들의 횡포에 맞서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목격자를 만나고 범인을 찾아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정부·재판부에 항의하였다. 포주들의 착취가 심해지면 기지촌여성들을 모아서 급여를 올리기 위한 생존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몇몇 자치회에서는 복지적 차원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두천의 자치회에서 80년대 진행했던 "공병사업"이다. 자치회에서는 역시 기지촌여성들이었던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일년 내내 클럽과 기지촌여성들로부터 빈병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빈병을 수집하면서 자치회는 기지촌여성을 개개인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빈 병을 판 돈으로 쌀이 떨어진 여성, 아픈 여성, 연탄이 떨어진 여성, 기지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을 지원하였다.

나. 두레방

두레방은 사회운동세력이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단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두레방은 1986년 의정부기지촌에서 개원하였다.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문혜림씨와 매춘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던 유복님씨가 1986년 3월 의정부시 가능동에 두레방을 개원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운동도 있을 수 없었던 기지촌에 귀중한 여성운동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두레방은 개원 후 80년대 말까지 기지촌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도하였다. 기지촌 여성들의 일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시도하는 방안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의료상담, 방문상담 등의 상담사업과 영어교실, 요리교실, 문화강좌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이 억압된 상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과정에

22. 새움터자료집(1997), 22쪽

서 겪은 폭력과 매매출업소에서 착취당해온 경험을 극복할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억압과 충격의 연속이었던 어린시절의 상처 또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두레방의 상담자들은 기지촌여성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용기를 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1989년에는 최초의 매춘여성전업프로그램인 두레방빵사업이 시작되었다. 두레방빵은 기지촌여성들의 전업과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기지촌여성들에게 전업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춘여성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두레방은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기지촌활동을 시작하였고,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다. 대학생들은 두레방을 방문하여 활동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은 기지촌여성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다. 새움터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기지촌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본격적인 기지촌여성운동단체로서 출발하였다. 1996년 동두천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처음부터 한국정부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다. 새움터의 운영위원회와 실무진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기지촌 여성운동가들과 관련여성운동가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새움터는 국내외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지촌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 군산 기지촌의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자립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작업장,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육지원, 기술교육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VII. 결론 -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기지촌을 미군의 휴양을 위한 군대매춘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군기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했으며, 미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기지촌을 정비하고 직접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기지촌의 포주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두 개의 정부의 통제 하에서, 미군과 포주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침해상황은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온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권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활동의 결과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을 “보호받아야 마땅한 인간”과 “보호를 덜 받아도 되는 사람”, 또는 심지어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

요가 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재활의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외면하는 계층은 없었는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매춘여성들이고 기지촌여성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매춘을 선택한 기지촌여성들에게 환원시킨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매춘여성들을 자발(동의)과 비자발(강제)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단일한 기준이었던 자발(동의)과 비자발(강제)의 구분에서 벗어나서, 인간 전체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의 행동을 취하는 상황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억압에 동의하거나 대상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의에 대한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발과 비자발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군대매춘의 유지와 확대의 책임을 기지촌여성 개인에게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실상 군대매춘을 유지하는 것은 기지촌여성 개인이거나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군대매춘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지촌여성들을 사는 남성고객의 수요와 군대매춘을 이용하는 미군관료와 미국정부의 정책에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동방지법에 의하면 매춘을 알선하고 강요하는 중간 매개자와 남성 고객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놓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지촌 여성들은 군대매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현행법과 제도를 그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9월 19일에 발생한 군산매춘업소화재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춘여성들의 심각한 상황에 공분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주둔군지위협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성계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여성계는 2000년 11월에 국회청원을 하였다.

●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3. Kathleen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1995)

- 1)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 2)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서도 양국의 배상 관례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 1) 현재 한국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아이자 매춘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 2) 입법례로서 마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 (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2)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 3)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매춘금지를 명문화한다.
 4.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2)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의무, 오염정화 및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어린이와 주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 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 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7.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 1)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2) 선진국 방위비 분담비율(일본은 76%, 독일은 33%, 나토회원국은 25%)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의 78%)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망이 취약한 한국상황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과 노약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와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8.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최소한 한국의 여성노동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새움터는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혼혈아동을 위하여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혼혈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혼혈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방과후보육, 상담, 장학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혼혈아동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 혼혈아동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한미 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예를 들면 미국이 독일과 맷은 협정에는 독일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가진 미국 군인이 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귀국해버릴 경우 미군 당국이 '아버지'를 찾는 데 협력하고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을 지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직 한국 내에는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나 민간단체가 전무하다. 소수의 여성단체나 이주민 노동자 단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대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새움터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귀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움터와 같은 유입국의 민간단체와, 송출국인 필리핀의 민간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한다.

<표 2> 외국인여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유입국	송출국
귀환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일시 도피처 제공	재취업 프로그램
생계비 지원	정보 제공
법률 / 의료 지원	상담 프로그램

현재, 새움터에서는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상담,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문제 제기,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회여성연합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주영, 한국 기지촌의 혼혈인 실태와 해결방안, 자원활동가 교육자료집, 새움터, 2000.
- 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1999.
- 마이카 죠셉 애들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내 비정부 기구의 활동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2000.
-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0.
-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새움터 자료집, 1997.
- 새움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도내 기지촌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경기도, 1999.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운동본부,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Gwyn Kirk and Carolyn Bowen Fracis, Redefining Security: Women Challenge U.S. Military Policy and Practice in East Asia, Berkeley Women's Law Journal 15, 2000.
- Katharine H.S. Moon,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1998.
- Kathleen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2001년 2월 17일 오후 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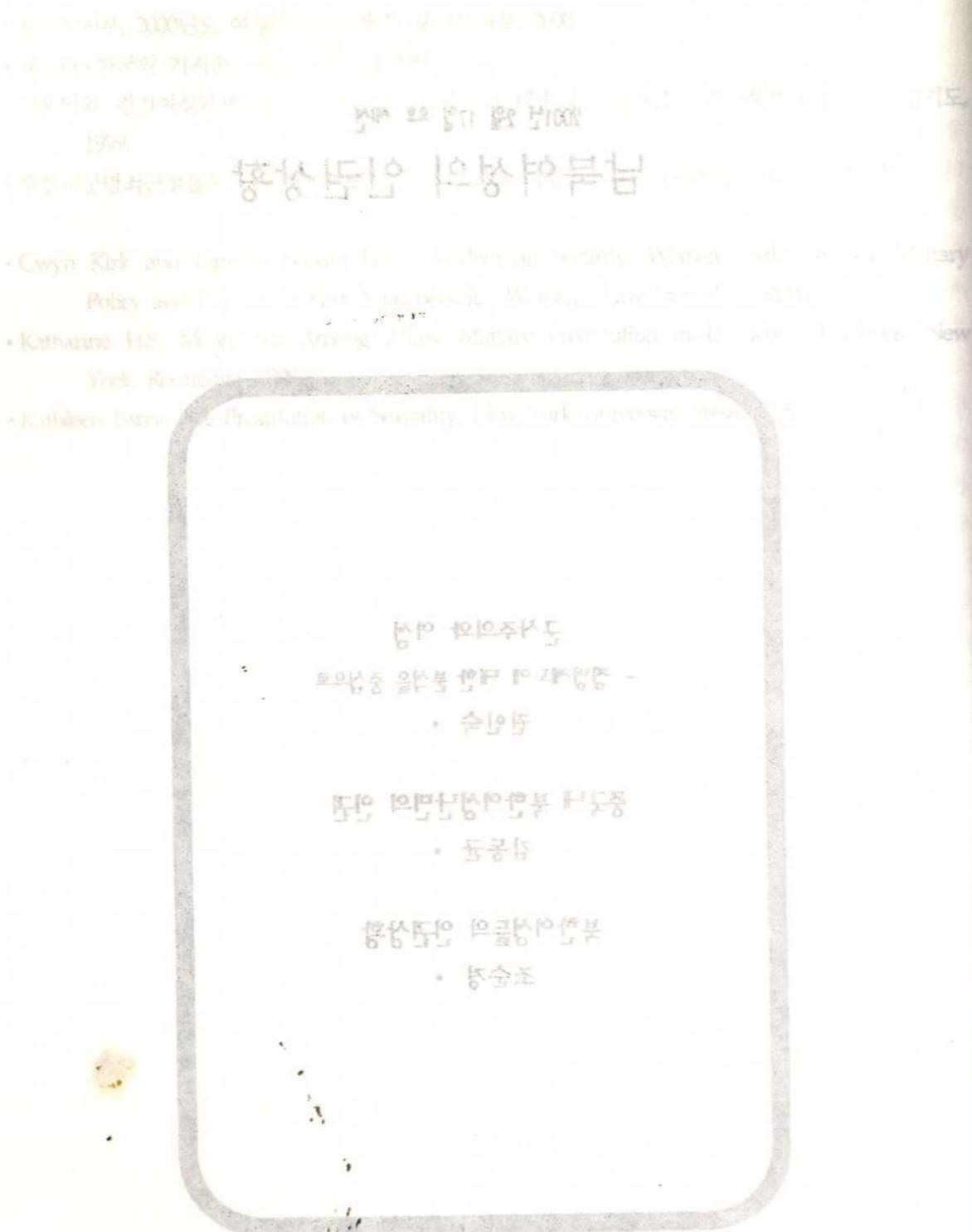
남북여성의 인권상황

군사주의와 여성

- 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권인숙 ·

중국내 북한여성난민의 인권
김동균 ·

북한여성들의 인권상황
조순경 ·



군사주의와 여성 : 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권인숙

머릿글

1997년의 이희창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징집 관계 파문은 병역비리에 대해 한국사회 의 축적된 분노를 보여주었다. 돈 있고 빠 있는 이들은 다 빠지고 힘없는 이들만 군대에 가는 불 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깊게 자리잡혀 있는 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1999년 12월 23일의 대법원의 군필 남성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은 남 성들의 격렬한 반발과 소송 당사자나 위헌판결을 옹호하는 여성에 대한 마냥사냥식의 대응을 낳으 면서 상황이 진행되었다 (주간동아 2000, 1/20. 정진성, 2000).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 고 있다. 병역비리는 불법적 또는 특권적 힘에 위한 징집면제자를 놓게 하는 사회부조리에 대한 문제로 군가산점문제는 군필남성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두 사 건은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군사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정도와 그것의 성별화된 현실을 보여 줌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두사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을 갖고 감정이 깊이 개 입된 채로 진행되었다. 이 두 사건의 폭발력이나 놀라울 정도의 민감함은 우선 징집제도가 한국사 회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 위치를 시사한다. 징병제도가 사회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그 사 회의 군사화된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기준이다. 그리고 이 핵심적 제도와 경험이 뚜렷이 성별화되 어서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끼치는 이 징집제도의 영향이 결 코 적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 두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반응, 전 여성학생운동가들의 인터뷰, 징집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여서 남성들의 공통된 징집경험이 한국에서의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깊게 뿐만 내린 성별화된 군사주의의 실체를 같이 진 단해 보고자 한다.

도전 받지 않아 온 제도

이희창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기피를 둘러싼 반응은 한국사회의 세 가지 기본 전제를 보여준다. 첫째는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모든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지는 데 있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셋째,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상황과 식민지 경험이후 강화된 약소국으로서의 절박한 방어의식은 군사적 국가방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논쟁이 가능치 않은 문화를 낳았다. 징집제도의 역사는 이러한 실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징집제도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병역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었고, 1957년 대규모의 개정(Seungsook Moon, 1998)을 거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강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노릇을 하곤 하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¹⁾ 한국의 징병제도는 병역비리에 대한 잡음 외에는 거의 논란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논란 없음의 가장 큰 전제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태도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가방어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공감대 때문이다. 식민지 경험을 거치면서 군사력과 약소국의 위치를 동일시하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혀 왔다. 또한 한국전쟁이후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이외에도, 자주국방과 경제개발만이 민족생존의 길이라는 박정희식의 논리전개가 아직까지도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지향성이나 계층성을 떠나서 강하게 존재해온 민족주의도 이런 국가안보중심적 논리의 한축이 되어왔다. 이러한 광범위한 공감대에 기초한 징집제도에 대한 인정은 한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하나회동 정치장교나 군대내 핵심장교들의 인맥이나 전 군인들의 사회요직 독점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의식은 문제의식은 항상 높았다. 그러나 물리력의 요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군대, 수많은 징집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군대는 분석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지 않았다. 징병제도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징병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인정하는 쪽과 지원제로 바꿔어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은 나뉘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뷰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징병제도에 자체에 생각이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자. “징병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네요. 글쎄 없어져야 하겠죠. 이상하네요. 한번도 분명하게 그게 어떻게 되야 하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징병제도에 관해서 뭐 다른 생각을 상상하지 말라고 세뇌당해 왔었던 것 같아요”(1998. 9. 10. 서울). 다른 전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징병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는 전쟁억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일반 군중들 중의 하나인 것 같아. 테레비에서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1998.8.13. 서울).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징병제도의 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볼 자극을 거의 갖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중추기관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과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미화, 언술화가 거의 되어오지 않은 한국社会의 징병제도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주변의 남자들이 일정기간 군대라는 것과 정치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정치군인중심의 군대라는 조직과의 이미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가족 중에 군대에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아래대화는 사뭇 전형적이다.

“군대에 관계했던 가족이 있으세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군대에 갔던 사람이 한사람도 없던는 이야기인가요?”
“아. 우리 아빠도 군대 갔었고, 오빠도 방위했어요. 내가 학생운동 하는 바람에 편하고 좋은데 있다가 밀려났었죠.”(1998. 7. 22. 서울).

다시 말해서 정치군인으로 이미지화된 직업군인의 삶과 징집된 남자들의 경험을 분리시켜 생각

1) 조지 플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20세기에 징집제도를 가동하려 했을 때 상당한 사회적인 논란과 저항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강제적인 힘의 주장사이의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Flynn, 1998).

하고 군대를 직업군인의 집단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반 군사독재 운동이 그토록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공통된 징집경험을 사회 다각면에서 의미화하려는 의지를 막는 데 한 역할을 했다.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이와 같이 징병제도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필요성에 대한 상상이 필요 없는 등의 속에서 존재해왔다. 아마도 유일한 도전이 징병기피를 둘러싼 병역비리논란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 없는 등의에서부터 국가방어에 대한 절대화까지 짧은 남성이 국가방어의 의무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에 대한 의미화된 또는 잠재되어있는 요구는 적지 않다. 즉 많은 남성들이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현실과,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공공의 힘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 아들의 징집기피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의 신문들은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없이 거의 같은 논조로 문제를 다루었다. 물론 어떤 신문도 징집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논조는 없었다. 기득권을 떠나서 군대가기를 원치 않는 한 개인의 욕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신문도 없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징집때부터 술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그런 군대가 강할 리 없었고, 이런 인식은 군에 대한 민간의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됐다.”며 강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은 병역문제가 결코 정치권의 ‘진흙탕싸움’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도 휴전선에서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음을 앞에 진상은 날날이 밝혀져야 한다”(1997. 8.1)고 국방의 의무의 신성화를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의 동요를 우려했다. 하태훈 교수는 중앙일보 시론에서 “18세에 달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왜 나만 군대에 가야하나’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이것이 바로 병역저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중앙일보, 1997.8.20)라고 전반적인 신문의 기조를 잘 정리했다.

결국 이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는 이전의 종교적인 힘이나 왕권의 힘 대신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충성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Hobsbawm, 1990:85). 이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전사이다. 많은 나라와 문화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병사는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기본모델로 존재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죽은 병사가 영웅적 상징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현대문화중, 무명병사의 무덤이나 기념비보다 더 강한 흡인력을 갖는 상징은 없다”(Anderson, 1991)고 했다. 질 스티븐스는 영웅전사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가부장적 민족국가를 세우는 데 결정적임을 지적했다(Stevens, 1998). 한국을 방문한 미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서울 국립묘지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병사의 자기희생은 남성을 모델로 한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제일의 희생으로 취급되는 이들 전사적 희생은 군대내나 군대 밖에서 그 사회의 군사화된 남성성을 부양한다. 한국에서는 징집제도를 통해서 남자의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이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잡혀 왔고 남성성의 기준이 되는 경험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측면은 군 가산점 제도와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화하는 특권으로 분석될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제 2차 학교로서 이 징병제도는 그 효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왔다. 명예로운 제대는 십대의 방황과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을 끝내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속에서 협조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있는 남성이 되

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서 같은 역할을 한다. 박 노자는 한국남성들이 모임의 첫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군대갔다 왔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서 군대필 여부가 한 남성을 이해하는 최선의 정보로 자리잡혀있는 현실에 놀랐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박노자, 2000). 조성숙은 군대에 갈 시기까지 겪는 남자로서 태어난 것에 대한 반복적인 회의와, 폭력적인 훈련과 어려움은 겪으면서 갖는 고통은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조성숙, 1997).

자기를 회생하는 전사라는 담론을 통해서 특권화된 남성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남성은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회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별 논란이 없는 동의가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의 징집된 군인들에 대한 공통된 태도는 동정이었다. 박영아²⁾는 “군대 가있는 동안, 남자들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을 군대에서 쓰는 거잖아요. 내 오빠는 등이 다쳤어요”(1998, 8월 13일 서울). 김영희는 “그냥 불쌍해요. 너무 불쌍할 뿐이에요”(1999, 3월 7일 뉴욕). 의외로, 단지 두 명의 여성만이 군대를 갔다온 이들에게 부여된 특혜를 지적했다³⁾. 대부분은 남성 징집에 대해 남성의 불쌍한 회생만을 주목해서 이야기했다. 남성의 징집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압도적인 반응은 불쌍한 남성의 회생에 맞추어지고, 남성의 특권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던 것은 국가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성별화된 사회적 역할의 상식적인 개념화를 보여준다. 즉 성별과 정치적인 경향에 상관없이 남성의 자기회생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나 군대에 있는 남성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무제한적인 근거가 한국사회속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산점 대법원 판결이후 행해진 경향신문의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우에도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34%)(경향신문, 2000, 1.6). 이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성대결이라는 것을 여성은 모두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고, 남성들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들과 그에 동조하는 여성일부와 여성단체들에 대한 남성 다수의 분노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상태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본다.

모성과 부성

가산점 논쟁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징병제와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들렸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산점외에 여성들의 모습은 주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애인으로서 형상화된다. 우리사회의 어머니와 아들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생각할 때 어머니들은 징집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이회창의 경우가 징집문제에 있어 부적당한 부성을 대변했듯이 아버지들도 징집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 받게 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회창 사건이 터졌을 때, 신문등의 논단에서 여성들의 자리는 없었다. 이회창 사건을 폭로한 이도, 이를 보도하고 시론을 쓰고 사설을 쓰는 이들도 거의 모두 남성들이었다. 때때로 어머니들은 이들 남성들에 대해서 아들들의 안부만을 염려하는 감정적인 가장 적절한 분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룹으로 표현되고 이용되었다. 한 논설위원은 분노한 어머니들이 대통령 투표일에 이 후보 아들의 징집기피를 잊지 말자고 표어를 써 놓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중앙일보, 1997.8.22) 또 다른 논설에서는 사람들이

2) 인터뷰한 여성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3) 이 인터뷰는 군가산점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해졌다.

징집면제에서의 불법적 또는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내 아들은 생사의 위기에서 고생하는데 너희 아들은 군대에 안 갔다는 도식에 기초한 여성들의 감정적 분노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1997. 8. 27).

일반인들과 신문등의 매체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야 할 이회창후보가 자식들의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징집면제를 막지 못했거나, 이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깊은 실망을 표현했다. 이런 대중적 반응은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것을 격려해야 한다는 부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역할기대와는 달리 어머니는 앞의 논설위원들이 주로 대변했듯이 징병제도의 감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경향신문, 1997, 2월 21)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우정의 무대에서의 제일 있었던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는 다분히 상징적이다.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어머니라며 어머니를 합창하며 무대위에 뛰어오르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나온 아들과 눈물의 포옹을 하면 보는 군인들도 시청자들도 심금을 울리는 듯한 배경음악과 함께 같이 울게 된다. 신기하리 만치 징병제도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는 사라진다. 최근에 발간된 두 권의 군대경험을 다룬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 성찬은 이렇게 수기를 쓰고 있다 “어머님이 이 소포를 받고 어떤 기분이 드실까? 아들을 군에 보내는 어머니는 보통 입대할 때 한번 우시고, 소포를 받고 또 한번 우신다는 말이 있던 데 ...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진 않을까?”(이성찬 1998:25) 또한 이성찬은 훈련이 끝나고 처음 계급장을 다는 연변장 주위에 우는 어머니들과 부동켜안은 훈련병들로 가득했다고 회고했다(이성찬, 1998: 206). 만약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고 그 여성후보의 두 아들이 징집이 면제되었다면 여론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그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회창후보에 대한 비판의 정도보다는 덜 하였을 것이다. 그 여성후보의 행동은 절박한 어머니의 자식사랑으로 이해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후보는 바로 그런 이유로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징병제도와 관련해 모성과 부성의 차이는 부성-국가 방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주체와 모성-사적 보조체로 간단히 분류해 볼 수 있다. 양육자와 병사의 성별 역할구분은 징병제와 관련한 부모의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은 모성적 본능에 주로 의지하면서 감정적 인간으로 자식과 관계한다. 반면 남자는 아들이 군대에 갈 것을 격려하므로 서 민족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부성적 본능을 극복하는 이성적 인간으로 표현된다. 좀 다른 맥락에서 쓴 글이지만 김선주 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군대에 가는 아들에 대한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군대가 기가 죽기보다 싫다 했지만 입대날을 받아놓은 아들에게 남편은 군대에 가서 직사도록 맞아야 ‘사람된다’고 한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정이 뚝 떨어진다”(한겨레신문, 1999.4.8). 군대 제대로 알고가기라는 책에서 장민서와 이예하는 책을 내는 머릿글에서 군대가기 전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내일이면 아침 일찍 훈련소로 떠나는 날, 저녁 식탁앞에서, “아프지만 말고, 그저 몸 건강히 지내다 돌아오면...”.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후두둑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어허, 아녀자가 밥상머리에서 웬 눈물이여, 남들 다 가는 군대고, 장부가 길 떠나는데 ...” 무슨 호들갑이나며 나무라시는 아버지의 타박에 바로 고개를 돌리셨지만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

김 소리는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까닭모를 뭉클함에 팬스레 것가락을 만지작 거린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절대 이 아들이 못난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없는 동안 몸 건강 히 계십시오.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장민서, 이예하, 1998).

물론 애국적인 모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쟁시기가 되면 이런 식의 비전쟁시기의 모성본능에 의거한 소극적이고 감상적인 모성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Lorraine Bayard de Volo는 국가에 의해 조종되거나 조작되는 전쟁시기의 모성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이데올로기 최전선을 따라 전쟁의 동원에 주체이기도 하고 객체이기도 하다. 모성적 이미지는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용된 어머니의 조직에 스스로 가담한다(1998)". Cynthia Enloe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온 어머니의 역할이 공적인 역할로서 평가되는 계기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 역할에 끌리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2000). 그러나 감정적인 집착에 대한 경계, 계속되는 동원을 위한 노력, 미디어 조작은 국가가 전쟁시의 여성을 신뢰하기보다는 위험스런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아버지에 대한 언론등을 통한 동원이나 이미지 조작이 없는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즉 애국적 모성은 국가의 국가방어나 전쟁과 관련된 일에 대해 민족국가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성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측면이 더 크다.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

이회창 사건은 한국사회의 평등한 병무집행에 대한 강한 욕구와 분노를 담고 있지만, 군대는 남성들 사이의 계층이나 학벌 등을 떠나 군대내의 위계질서로 재편된다 면에서 일정한 탈사회적 평등함을 내포한다. 군대밖 사회의 위계를 떠나서 형성되는 이 탈 사회적 평등함은 남성들간의 독특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집중적이고 힘든 훈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형성되는 이 연대감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형성한다. 남성성이 강화된 전우의식이 그것이다. 이성찬은 이 새롭게 형성된 남성적 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다.

이윽고 연병장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린다. 모두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참으로 기묘한 장면이었다. 남자가 우는, 그것도 명색이 군인인 남자들이 우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본적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한꺼번에 눈물 흘리는 장면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6주의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들... 싸우면서 미운정도 들고 같이 고생하면서 연민의 정도 들고 그래서 깊어진 우정 (1998: 212).

이렇게 형성된 군사화된 남성적 연대감은 이번 군가산점 논쟁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남성들의 폭발적이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은 일단은 군대에서 자기가 한 희생을 사회가 부정하는 듯한 데서 오는 감정적 반발감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적 해당사항은 없지만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동료 또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을 경험한, 그리고 경험한 동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남성적 연대감에서 오는 분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의 한 특성인 강한 남성적 동류의식의 한 근거를 군대경험이 획득한 연대감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집단적 연대감은 단순히 고생을 같이 했다는 데서 오는 연대감만은 아니다. 군대생활은 민족적 실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군대복무기간 대부분의 한국남자들은 군대 밖 사회의 관계나 배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이년 이상의 기간을 국가방어란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실체와 실재를 확인하게 된다. 즉 대한민국의 남자로서의 구체성과 경험적 실재가 다져지는 것이다. 조성숙이 행한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한 군필자들은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 당하는 것이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한 군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입대를 하면 저희관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온 것이다" 라든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한번 가야한다" 라는 것이다 (조성숙, 1997: 161 재인용).

성문화

물론 이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성집단으로서 재 탄생하는데 공통의 성관념의 형성과 실천도 적지 않은 부분이다. 조성숙은 신참병이 고참병으로부터 다분히 과장되고 폭력적인 성관념을 배우고 여성의 성의 상품화와 매춘이 자연스런 군대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설명했다(조성숙, 1997). 장필화와 조형은 성문화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신참들을 균질화시키고 군대내의 질서를 따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분석하기도 했다(1991).

그러나 이렇게 군사화된 남성성과 성폭력이나 매춘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이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성문화와 징병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대했던 것 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계 수위로 나타나는 성폭력발생율의 원인을 물었을 때 많은 인터뷰한 여성들은 징병제도가 원인일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았다. 인터뷰 자리가 군사주의와 관련되고 군대와 관련되어 많은 질문을 한 뒤였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의 폭력적인 성문화와 징병제도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은 의외로 풍부하고 구체적이었다. 한 전 활동가는 "글쎄요, 그런식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588이나 영등포 가는 게 군대가기전이나 휴가 나왔을 때 늘 하는 거잖아요"(1998.9.9, 서울). 다른 인터뷰한 여성의 반응도 비슷했다. "예,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여자를 사는 게 군대가려는 친구들 완전히 취하게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녀촌은 항상 군대랑 가깝게 있잖아요. 다방의 아가씨들도 다 몸을 파니까. 남자는 여자들 몸을 사는데 익숙하니까. 만약 그게 가능치 않으면 강간을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만한 상황적인 압력이 별로 없으니까요" (1998.8.31, 서울).

대부분의 인터뷰한 여성은 성의 상품화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 군대에 간 남자들의 성문화를 많이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 군대간 남성들의 성문화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이나 예외가 드문 비대화된 매춘산업의 문제와 연결시켜보려는 의미화와 언술화의 과정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재는 군대라는 조직과 징병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왔던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성문화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남성들의 집단문화와 언어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군대 갔다온 경험이 큰 역할을 했을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만의 집단적 군대경험이 우리사회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직화되었으며 성별문화에 어떤 영향을 기쳤는지는 별로 의미파악이 되거나 언술화 되어 오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이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그 중의 한 이유는 물론 여자는 자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 군대경험을 하지 않은 다는 것이다. 권오분이 군대경험 여자는 자원을 하는 경우를 분석한 글을 보면 군대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여학생들에게 이 남녀공학대학에서 의미화 되는 과정을 분석한 글을 보면 군대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여학생들에게 했을 때 반응은 '군대경험은 갔다온 남자들에게 물어야지' 혹은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이지 여자들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가다보면 어느 정도 여성적인 시각에서 볼 것을 기대했던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남성들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인양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권오분 2000: 33). 권오분의 연구는 여성들이 타자로서 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동조자로서 포섭되면서 군사화되고 남성화된 문화와 언어의 영향권에서 살아온 것을 잘 보여준다.

결론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남성징병제도 하에서 한국인들은 어떤식으로든 이 징병제도와 관련을 맺어 왔고, 경험을 쌓아왔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나나 여동생으로서 애인으로서 또는 매춘여성으로서 징집자, 징집기피자, 징집면제자, 징집예비자로서나 징집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집단적이며 또는 개인적인 이미지, 의견, 기억들을 지난 몇십 년간 축적해 온 것이다. 또한 남성들은 실질적으로 2년내지 3년의 집단기숙속에서 민족주의 집단주의의 반공산주의, 군사화된 남성성의 형성에 관한 거의 비슷한 경험을 거쳐왔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집단적인 삶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징병제도 한 거의 비슷한 경험을 거쳐왔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집단적인 삶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징병제도 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 모두는 문화, 정책, 국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조직해나가는데 영향을 미쳐왔다고 봐야한다.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더 그렇다. 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적 불평등이나 다분히 폭력적인 남녀간의 관계, 백만이 넘는다는 매춘 여성의 존재도 이 징병제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이런 중추기관의 존재와 그를 둘러싼 집단적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장치들이 한국의 군사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성과 문화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도전은 잘 설명되지 않는 많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권오분, 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노자, 2000,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공저,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 이성찬, 1998,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 서울: 들녘.

장민서, 이 예하, 1998, 군대 바로 알고 가기, 서울: 정보나라.

장필화와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정진성, 2000, 군사산업체를 둘러싼 논쟁,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에 관한 자료집.

조성숙, 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영문 문헌

- Anderson, Benedict, 1996, *Imagined Communities*, London and New York: Verso.
- Enloe, Cynthia, 1989, 90, *Bananas Beaches &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3, *The Morning After*,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0, *Maneuver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on, SeungSook, 1999, Unraveling Militarism: Gender Equality and a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and Employment Benefits, Presented at the 1999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in Boston.
- Steans, Jill, 1998,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Introduc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Volo, Lorraine Bayard, 1998, Drafting Motherhood: Maternal Imagery an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Nicaragua, in *The Women and War Reader*, edited by Lois Ann Lorentzen and Jennifer Turpin,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중국내 북한여성난민의 인권

- 중국동북부지역에 대한 인권실태보고서¹⁾를 중심으로 -

김동균 (사) 좋은벗들 이사 / 변호사

I. 문제제기

1. 북한 식량난과 북한난민²⁾의 발생³⁾

19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라 할 것이다.⁴⁾ 북한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의존하여 왔다. 1990년대 초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에너지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북한의 경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의 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시켰다. 한 부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것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연관된 공장의 가동도 중단되었다. 생필품의 부족사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업생산량의 감소였다. 비료와 비닐,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생산이 감소된 데다가 구 소련과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싼값에 들여오거나 외상으로 들여오던 곡물수입이 국제가격으로의 거래 및 경화결제가 요구되면서 수입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북한의 식량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중앙배급시스템에 의한 식량 공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사) 좋은벗들에서 1998년 12월 발표한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 북한 식량난의 실태」⁵⁾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4% 이상이 1994년도에 이미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배급시

1)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이고, 1999. 8. (사) 좋은벗들이 작성 발표하였다. 보고서전문은 www.goodfriends.or.kr 참조

2) '북한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여터 가지 논의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탈북자' 또는 '탈북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북한난민'이라고 하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여성난민' '북한남성난민'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이하의 내용은 김정님(좋은벗들 조사연구부장),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 및 인권실태', 북한인권문제(경상대학교 심포지움 자료집), 경상대학교(2000), 1-2쪽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인용하였다.

4) 북한경제난의 원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북한내부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함께 들고 있으며, 북한경제난이 오로지 북한의 내부적 요인만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임원혁, '통일준비: 북한경제의 몰라과 대북경제정책의 과제', 1999 민족의 희망찾기 (강정구, 법륜 엮음), 정토출판(1999), 98-104쪽 참조

5) 좋은벗들은 1999.12.에 북한난민 1,855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식량난의 실태'를 추가 발표하였다. 좋은벗들, 사 람답게 살고 싶소 - 북한난민 1,855명 증언, 정토출판(1999), 171-210쪽 참조

스템이 큰 홍수피해가 있었던 1995년 이전에 이미 심각한 붕괴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획일적으로 공급되던 식량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주민들(군인, 당·정 간부, 평양시민 등 특수계층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계층)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먼 길을 떠돌아 다녀야 하였다. 우선 집안에 돈이 될만한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와 장마당에서 식량과 바꾸어 먹는가하면,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하루 한 두 끼의 먹거리를 장만하기도 하고, 농촌과 산과 들로 산나물이며 나무뿌리, 약초 등 대용으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몇일을 헤매다 돌아오기도 하면서 하루 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북한내에는 이렇게 식량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주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교통로를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에서는 이삭줍기와 산나물 캐기를 하고, 가정의 집기물을 가져와 식량과 바꾸기도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이나 어촌에서 구한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북한내를 유랑하면서 연명하던 주민들 중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조-중 국경을 넘는다.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한 동북3성지역에는 약 180만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어서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와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친척이 없는 사람은 중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다. 국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과 압록강은 상류지역은 강물이 얕고 강폭이 좁기 때문에 경비병의 눈만 피하면 쉽게 건널 수 있다. 식량난 이전에는 특별한 증명 없이도 서로 왕래가 가능했지만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이제 허가 없이 국경을 넘게되면 불법 탈국자로 처벌을 받게되고, 국경경비대의 단속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짙주립에 지친 북한주민들의 월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경경비대의 눈을 피해서, 또는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식량난 초기인 1995, 1996년에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친척을 찾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었다. 친척집에서 쌀이나 옷가지 등 물품을 지원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하거나 값이 싼 식량으로 바꾸어 먹는다. 그러나 식량난이 장기화 되면서 몇차례 도움을 준 중국 친척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에 넘어가는 북한난민들의 특징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과, 중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확한 수치파악은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넘어와서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정착하기를 원하는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2. 북한난민(특히 북한여성난민)의 심각한 인권침해

1995년이래 조-중 국경을 넘는 식량난민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그들이 중국내에서 생활하는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북한난민들이 중국내에서 당하는 갖가지 인권침해상황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우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여성난민들은 북한난민중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데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감금, 폭행, 성적 학대, 노동착취, 매매춘 등의 갖가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난민들은 중국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6) 최근 2,000년에 들어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일부 나아지면서 월경하는 북한난민의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고, 중국내에 체류하는 북한난민의 숫자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어디에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열악한 조건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은 수시로 북한난민들에 대한 수색을 벌여 난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으며 이를 넘겨받은 북한당국은 북한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취조와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난민들의 규모와 분포, 생활상황 및 이들에 대한 갖가지 인권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수년동안 북한동포돕기운동과 북한식량난민 지원활동을 전개해온 (사) 좋은벗들⁷⁾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북한난민들의 실태와 인권상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조사결과를 담아 1999년 8월에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⁸⁾

이하 이 글에서는 위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중국내 북한난민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알 아보고 이어서 중국내 북한여성난민의 인권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음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II. 중국내 북한난민의 실태

1. 조사의 개관

(사) 좋은벗들은 1998. 11부터 1999. 4 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북한난민들의 실태 및 인권침해 양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좋은벗들은 위 실태조사를 한 후 통계 처리방식을 통하여 북한난민의 분포실태와 규모를 추정하였고, 북한난민들(872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난민의 인권침해실태를 발표하였다. 조사지역은 동북 3성(전체 총 294개의 시·현)중 일부지역인 29개 시·현에 속한 마을중 2,479개 마을(연변조선족 자치주내 마을중 1,566개마을과 위 자치주를 제외한 동북3성내 마을중 913개 마을을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마을내 거주민 3-5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 마을의 북한난민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마을 내 북한난민(총 872명)과의 직접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중국내 북한난민의 실태⁹⁾

가. 북한난민의 규모와 분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의 규모는 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¹⁰⁾ 북한난민의 분포는 북한난민들

7) 1996년 12월에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가 1999년 5월에 사단법인 좋은벗들로 재발족하였다.

8) 좋은벗들의 위 보고서외에 중국내 북한난민들의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로는, 윤여상,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1998) 과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중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1999)가 있다.

9) 이하의 내용은, 김정님, 앞의 글 2-10쪽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이다.

이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연변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안당국의 수색과 체포를 피해 동북3성의 내륙지역으로도 상당수가 이동하여 거주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난민비율을 보면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 지역의 난민비율이 1.6%에 이르고 있어서 연변지역 난민비율 1.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경에서 가까운 연변지역에 북한 난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난민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난민들은 특별히 조선족의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연변지역은 조사마을의 15.5%, 그리고 연변외 동북3성 지역은 조사마을의 40.7%가 조선족 0%인 한족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의 난민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연변지역은 0.7%의 난민비율을 보였고 동북3성지역은 1.2%의 난민비율을 보였다. 연변지역의 경우는 조선족의 비율에 따라 난민비율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연변외 동북3성지역은 조선족비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난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동북3성지역에는 한족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도 북한난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전체자료의 난민비율 1.7%를 기준으로 난민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사지역이 분포한 지역은 전체 동북3성 294개 시·현지역 중 29개 시·현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29개 시·현지역을 모집단으로 하여 난민비율을 적용하여 난민수를 추정하게 되면 29개 시·현의 총인구 1,180만명 × 0.017 ≈ 20만이 된다. 또 최소 난민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선족이 0%인 마을의 난민비율(연변 0.7%, 동북3성 1.2%)을 적용하여 난민수를 추정하면 약 14만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29개 시·현지역에는 최소 14만에서 최대 20만의 난민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9개 시·현 지역은 전체 동북3성 인구의 11.3%에 불과하므로 모집단으로 상정하지 않은 지역이 광범위한 점과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떠돌아 다니는 난민들(특히 꽃제비 어린이)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또한 다른 비공식적인 자료를 참작했을 때 30만명정도의 난민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북한난민의 유형별 특징

(1) 북한난민의 성별

북한난민의 가장 큰 특징은 난민의 성별비율이다. 여성이 일방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난민의 여러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표1>에서 보면 전체 난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5%에 이르며 특히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지역의 여성난민비율은 90.9%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낮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역시 여성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중국내 북한난민의 규모에 대하여는 조사주체에 따라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크다. 정부내 관련부처의 추산은 1만 - 3만명선이고, 윤여상은 10만명선으로 보고 있으며,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는 10만 - 20만명으로 보고 있고, 이금순은 북한난민의 규모를 최소 10만명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1999), 6-11쪽 참조

<표1> 여성 난민의 비율

지 역	총 난민수(명)	여성 난민수(명)	비율(%)
연변 조선족자치주	15,525	9,338	62.2
동북3성	12,947	11,762	90.9
총 계	28,472	21,100	75.5

이것은 북한난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기간 이동이 유리한 측면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북3성 지역의 여성난민의 비율이 90.9%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의 결혼형태로 거주하는 여성난민이 연변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2>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난민이 연변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2>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난민이 연변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2>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난민이 연변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2>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표2> 난민의 거주형태

거주형태 지 역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결 혼(%)
연변 조선족자치주	17.9	58.2	23.9
동북3성	21	12.4	85.4
총 계	10.7	37.4	51.9

(2) 북한난민의 연령

북한난민의 연령은 20,30,40대가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연변과 동북3성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젊은층이 쉽게 월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3성지역은 20대의 비율이 특히 높은데 이것은 20대 젊은 여성의 인신매매, 또는 소개혼으로 결혼하여 거주하기 때문이다.

<표3> 난민의 연령

연 령 지 역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변 조선족자치주	4.7	25.9	30.9	25.3	9.6	3.5
동북3성	0.5	33.9	32.6	22.9	8.4	1.6
총 계	2.8	29.6	31.7	24.2	9.1	2.6

다. 북한난민의 생활실태와 인권상황

북한남성난민과 북한여성난민을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인 북한난민의 생활실태 및 인권상황은 아래 III.에서 살펴보는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꽃제비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래 III.에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¹¹⁾

III. 중국내 북한여성난민의 인권실태¹²⁾

1. 북한여성난민의 중국내 생활여건

가. 조·중 국경선의 월경 :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1) 월경의 결심동기

풀과 나무뿌리, 산나물 등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중국으로 넘어와 식량을 구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조·중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경의 경비는 날로 강화되고 있고 국경을 넘다가 국경 경비대에 잡히면 심한 고문과 감옥 생활,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므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은 생명을 내걸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월경을 결심하는 것이다.

<난민증언 1> 위급한 상황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는 조선에서 몇 해 동안 배급도 신봉도 주지 않으니 집기물을 팔아 옥수수 가루를 사고 산나물을 캐어 푸대죽을 쑤먹었으며, 산에 가서 땅을 파서 밭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으나 여성 식구의 끼니를 이어가지 못해 나중에는 소나무 껍질과 벼 뿌리를 가공하여 집 식구들이 먹으니 변비가 생겼고 영양실조가 와 나이 어린 두 아이를 죽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살아 나갈 방법이 없어서 나머지 네 식구가 도강하여 중국에 오는 도중에 또 열살 나는 여자 애를 죽이고 열세 살 나는 아이와 남편 그렇게 셋이서 중국에 계시는 사촌 시형 집에 찾아왔습니다.

(47세 여자 함경북도 명천군)

(2) 월경의 과정

북한 주민들이 월경을 결심하게 되는 절박함은 월경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놀라운 사실은 도장하다가 아기가 올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내 한 몸 유지하기 위해 친척이며 가족도 서로 돌보지 않으며 인심이 흥흉

11) 꽃제비 아이들의 생활상과 인권실태에 대하여는, (사) 좋은벗들, 앞의 보고서, 30-32쪽을 참조

12) 이하의 내용은 (사) 좋은벗들, 앞의 보고서, 14-37쪽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이다.

하다는 것은 많은 증언들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를 역전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온다는 것은 이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정을 상실할 정도로 현실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도강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국경지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몸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아이가 탈진하여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하며, 슬퍼할 시간도 없이 아이를 길가에 묻고 다시 길을 재촉해야 한다. 강을 건너다가 가족이 물에 빠져 사망하기도 하고, 경비대에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건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난민증언 2> 도강하다 부상함

남편의 후사를 마친 뒤 나는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98년 2월 나는 먹을 것을 조금 장만해 가지고 딸애를 들쳐업고 도주의 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도보로 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면서 혜산의 변경지대까지 왔습니다. 딸애는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어 감기까지 걸려 인사불성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나의 발은 얼어버려 터진 자리에서는 피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밤중의 어둠을 이용하여 무사히 도강하여 중국의 장백현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극도로 되는 배고픔으로 길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28세 여자 함경남도 리원군)

<난민증언 3> 도강중 체포됨

나는 중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을 듣고 나도 중국으로 가리라 마음먹고 강을 건너다가 국경경비대에게 붙잡혀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 붙잡혀서 매도 많이 맞았으며 1달 가량 구류 당했다가 나온 지 한 두 달 잘 된다. 보위부 사람들은 나를 보며 몸을 팔려 간다느니 별의별 욕을 다하며 지나가고 오는 사람마다 발로 차고 때리었으며 언제나 무릎을 꿇고 손을 뒤에로 가게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정말로 참기 힘들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열두 번이었으나 그들은 내가 자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몸에는 아무 쇠붙이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갈꼭지는 끊어버리고 그것으로 먹게 하였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1년 맞잡이였다. 그들은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담보서를 쓰고 나를 내보내였다.

(여자 함경남도 단천시)

나. 북한여성난민의 중국내 거주 형태

(1)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보호

북한난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친척을 찾아 국경을 넘어온다. 친척을 찾아왔을 경우에는 다른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친척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혹시 이웃에라도 북한난민의 존재가 알려지면 신고되어 공안의 수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친척들도 경제력이 약하여 매번 찾아오는 북한의 친척을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친척을 찾아왔더라도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북한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2) 모르는 사람의 보호

북한난민들이 대량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한 1996, 1997년도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을 찾아와 지원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들도 무작정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난민들은 같은 민족인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거나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3) 사실상의 결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여성난민 중에는 사실상의 결혼형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는 중국에 시집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혼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사는 경우도 있고,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 결혼하여 사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에 걸리게 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팔려가게 된다. 이들 중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한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먹는 것은 걱정이 없지만 마음만은 조국에 있을 때가 훨씬 편안했다고 증언한다.

(4) 떠돌아다니는 북한여성난민들

중국에서 북한난민들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친척이 없이 무작정 넘어온 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했을 경우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보호해준 사람은 고액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같은 동포로서 잠깐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는 어려워한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주인은 항상 긴장 속에 있다가 공안의 단속이 있을 것 같으면 이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낸다. 중국에 가면 쉽사리 도움을 받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온 북한난민들에게 이런 현실은 큰 고통이다.

다. 북한여성난민의 중국내 생활 여건

(1) 친척을 찾아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함

장기간의 식량난으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경제력이 농락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 없는 살림에 깊주리는 친척들을 위해 어렵게 돈과 옷을 마련하여 도와주곤 하였는데, 식량난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도와 줄 여력이 없는 것이다.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친척을 찾는 북한난민들 또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스스로 돈을 벌기를 희망한다.

(2)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북한난민을 보호하거나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이 고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또 식량난을 피해 중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여성난민의 경우는 떠돌다가 소개로 팔려서 시집가는 경우도 있다. 그 생활이 본인이 원하는 결혼생활이 아니라 해도 공안의 수색에서 약간은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난민증언 4>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소개로 팔려 시집감

저는 흑룡강성에 가면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말을 듣고 역전과 음식점에 가서 돈을 빌어 차비가 겨우 되니 저는 흑룡강성 넝안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작 와보니 조선에서 온 사람이 많아 일자리를 인차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소개에 농촌 조선족로 총각에게 팔리어 왔습니다.

(3)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여성난민들

중국에서 숨어서는 북한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강도에게 부상당해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치료받는 중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 공안에 잡혀가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난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난민이라는 이유로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 모든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인신매매를 당하여도 중국공안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

북한난민들의 심리상태는 대부분 심한 긴장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 공안에 의한 수색과 체포, 그리고 본국 송환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난민들은 비록 중국에서 불안전하나마 먹을 걱정은 하지 않고 생활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국경을 넘어왔고, 병들어 누워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두고 온 북한여성난민들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낮이고 밤이고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난민증언 5> 팔려가 지내면서도 가족에 대한 걱정

중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식당을 돌아다녀도 누구도 나를 늙었다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한 40여 세 되는 아주머니가 저보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나를 데리고 몇 시간을 걸어 한 편벽한 농촌의 오막살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40여세 나는 남자와 그의 어머니 되는 듯한 노친이 있었습니다. 나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와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 한참 쭉거리더니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나를 1천원에 그 홀아비한테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괜찮게 대해 주었는데 집은 어찌도 가난한지 이 때까지 새 양말도 사 신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조선보다 많이 나았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집식구들에게 보탬이 될 돈도 마련하지 못했거나 남편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애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38세 여 함경북도 고무산)

2. 인신매매

가. 조직적인 인신매매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는 북한여성들의 50% 이상은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¹³⁾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①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강을 넘어온 다음 미리 연계된 중국인에게 넘겨지는 경우, ② 단독으로 강을 건너왔으나 강변에서 지키고 있던 인신매매꾼들에게 불잡혀 팔려 가는 경우, ③ 중국의 내륙 도시까지 와서 역전이나 시장에서 인신매매꾼들에게 불잡혀 팔려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여자를 모아서 넘기는 사람과 강변에서 인계 받는 사람, 그리고 아파트에 여자들을 가두어 놓고 사러온 사람에게 여자를 흥정하여 파는 사람 등 단계를 거치면서 값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조·중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内地)에는 팔려온 북한여성난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난민증언 6> 인신매매의 실태

우리 여자 3명이 남성을 따라 밤 7시에 강을 건너 도문으로 왔다. 우리를 한 집에 데려다주고 차츰 친척과 련계하라 하고는 갔는데, 후에 안 일이지만 이 남자는 조선 여자를 전문적으로 팔아먹는 인간이였고 매인(人) 당 중국돈 2천원씩 벌고 있었다. 이 중국 사람 역시 우리를 연길로 데려가서는 또 3천원씩 받고 돌아갔다. 그들은 아파트 이층집에 가두어 놓고 옷을 몽땅 벗겨 놓고 이불만 쓰고 있게 하였다. 또 임자가 나서면 우리를 팔아먹을 심산이였다.

우리 가기 전에 한 30대 여자는 자기로 인해 이 집 주인은 숫한 돈을 벌었는데, 팔아먹고는 그 무슨 방법을 대어서는 도망쳐서 다시 자기한테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알기 때문에 죽어치운다고 하였다. 자기는 여섯 번 팔려 돌아왔는데 그 주인의 야욕도 채워 줘야 한다고 했다. 때마침 45세 돼보이는 남성 한 분이 사람을 보러 왔었는데, 빼스장에서 물건을 나한테 맡겨 놓고 소변보러 간 틈에 달아났다.

나. 인신매매의 유형

(1) 북한내 인신매매꾼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시장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괜찮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회유한다.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가족 중 한 명의 입이라도 더는 것이 급한 현실 앞에서 여성들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나 다른 가족들의 의사도 마찬가지다.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식을 그대로 데리고 있다가는 언제 죽어죽을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먼 타국 땅이나마 죽지

¹³⁾ 좋은벗들이 앞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면담한 872명의 북한난민중 여성난민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수치이다. 위 보고서 작성후에도 약 100여명의 북한난민들에 대한 추가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않고 살아만 있는 것도 큰 다행이라 여기며 땔을 보내는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인신매매자에게 가서 얼마(조선돈 10,000원 정도)를 받고 땔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인신매매꾼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오면 한 사람당 80-100달러를 받고 중국측 인신매매꾼에게 인계된다. 여성들을 데려온 중국인은 자기 집에 데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다음 여러 사람들을 알선하여 여성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여성을 데리고 가서 본인이 대면한 자리에서 값을 정한다. 보통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은 5,000위안, 4,000위안, 3,000위안을 받고 여성을 넘기게 된다.

부분의 여성들은 중국 농촌에서 결혼을 못 하였거나,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나 비정상적인 남자들에게 사실상의 결혼 형태로 팔려간다. 그리고 유통업소에 팔려가서 매매춘을 강요당하며 사는 경우들도 있다.

<난민증언 7> 오죽하면 어머니가 돈을 받고 땔을 팔까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 놓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헤매며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언제는 방법이 없다.” 나는 처음에 달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어머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니 옳았습니다. 하여 나는 어머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돈 1만원을 받고 저를 팔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자식을 타국에 팔겠습니까?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 근심은 하지 말고 너 하나님 가서 잘 살아라 하시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녀는 이렇게 눈물로 작별하였습니다.

(24세 여자 함경북도 회령시)

(2) 중국 강변의 인신매매꾼

중국의 국경 변에는 전문으로 여성을 팔고 사는 인신매매꾼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 중국에 도움을 받기 위해 넘어오는 여성들은 상당수가 이들에게 걸려들게 된다. 인신매매자꾼은 강을 건너온 여성에게 접근한 후 중국은 매우 위험하므로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여성을 데리고 간다. 여성은 데리고 가서는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중국 옷으로 갈아 입힌 다음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하여 곧바로 중국의 내지로 이동을 한다.

인신매매꾼들은 미혼여성이든 기혼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팔아 넘기는데 심지어는 남편과 함께 강을 건너온 여성까지도 남편에게서 빼앗아서 데리고 간다. 여성이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는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칼이나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기도 하며 여러 명이 달려들어 눈 가리고 입을 막아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난민증언 8> 자매가 모두 중국 인신매매꾼에게 걸려든 경우

우리들이 같이 도강하다가 동생이 얼음 구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웬 청년이 방조하여 구해냈습니다. 우리 두 자매는 이 청년을 따라가서 지냈는데, 수일 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곳은 변경이기에 위험하니 남방에 가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귀인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들은 만원에 팔려 시집을 오게 됐던 것입니다. 나의 동생은 인물이 이쁘지만 저는 남자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다행하게도 저의 동생은 40세 되어 보이는 한족이었는데 저에게는 50세도 넘어 보이

는 병어리였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제가 달아날까봐 밖에 갈 때면 살창문을 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저를 벗기고 회통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동생이 만난 신랑은 그래도 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차린 동생 신랑은 저를 구해냈습니다.

(27세 여자 함경북도 은덕군)

(3) 중국 내지의 인신매매꾼

중국의 도시에서도 북한여성난민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에서 온 여성인지 알게되면 불잡아서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꾼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 온지 얼마 안돼는 북한 여성난민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친절을 베풀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여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여성을 팔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중국 내에서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증언 9> 조선족 청년에게 불잡혀 팔려감

저는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일자리를 찾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30여세 되는 조선족 청년에게 불잡혔는데 그는 자기가 공안이라 하며 나를 데리고 갔는데 따라가 보니 해림시 부근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돌아다니다가 한족에게 불잡히게 되면 한족로 총각에게 팔려가게 되니 저더러 이 마을에 있는 조선족 총각에게 시집가라고 하며 한 청년을 저에게 대면시켰습니다. 저의 이런 처지에 낯선 곳에 비법적으로 도강해온 몸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에 없기에 저는 대답하고 그 총각집에 따라갔습니다.

(23세 여자 함경남도 단천군)

다. 인신매매로 팔려 가는 곳

(1) 중국의 내지로 팔려감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인신매매가 횡행하면서 이제 북한여성들이 팔려 가는 지역은 조·중 국경 지역을 벗어나 중국의 내지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먼 지역으로 북한여성난민들이 팔려갈 수 있는 것은 조·중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가 연계를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자료 중 절강성과 안휘성, 호북성, 천진, 북경 등 중국의 내지로 팔려 가는 여성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른 인신매매 형태와 같이 강변에서 인신매매되어 결혼형태로 팔려간 것 이었다.

<난민증언 10> 중국내지로 팔려감

나는 한 집에서 가정보모일을 했다. 어느 하루는 집주인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겠는가하면서 돈 벌 데를 소개해 주겠으니 한달로 임이 1천원씩 하는 데로 가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집주인의 소개로 한 남자와 함께 천진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우리는 밤낮을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천진까지 가서 차에서 내렸다. 거기에서 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골 안으로 갔다. 나는 그제야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팔려 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찌 는 수가 없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자 웬 한족 영감이 마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 영감이 돈 5천원에 나를 산 것이라고 했다. 세상에 울지도 못할 일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시피 하여 그럭저럭 8개월을 지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시름을 놓은 모양인지 영감이 어 디로 나가고 없었다. 나는 이때다 하고 집을 싸가지고 정신없이 그 집을 뛰쳐나왔다.

(46세 여자 량강도 혜산시)

(2) 나이 많은 한족 홀아비나 알콜중독자 등에게 팔려감
인신매매에 연루되면 대개는 사실상의 결혼형태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중국의 사회 현 상과도 맞물려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의 여성들은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중국의 농촌에는 남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매우 가난하다거나 알콜중독자, 도박꾼, 성불구자, 나이 많은 홀아비, 노총각, 신체장애자 등의 경우는 더더욱 결혼하기 어렵다. 국경을 넘 어오는 북한여성난민들은 인신매매에 걸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난민증언 11> 한족 홀아비에게 팔려감

저는 동포들이 가져온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농촌에서 감자국수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50세 되어 보이는 한족에게 팔렸습니다. 상처한 지 12년 되었는데 작은아들이 13살이였습니다. 나는 임시 있을 곳이 있으므로 매일 집을 건축하고 옷도 짓고 낡은 실을 풀어서 뜨개도 뜨겠습니다. 이 한족 분은 마음이 후한 분이여 서 늘 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손 시늉했습니다. 제가 임신된 것을 알고 그는 저를 데리고 개인부인과 병 원에 가서 유산시키고 그후에 환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27세 여자 함경북도 길주군)

(3) 유흥업소로 팔려감

인신매매된 북한여성난민중에는 인신매매꾼에 의해 유흥업소로 팔려가 매매춘 등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난민증언 12> 유흥업소에 팔려감
중국에 가시집가서 제 집을 도와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왔다. 지금 우리 들은 한 음식점에서 아가씨질하고 있다. 후에 우리 셋이 한 사람에 2천원에 팔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상에서 손님들과도 같이 술을 마셔야 하며 한 상에서 20원씩 팁을 받고 한 자리에 들면 50원씩도 받는다. 제 조국 버리고 타국 땅에서 기실 매음녀 생활을 하니 어떤 때는 자다가도 꿈틀하며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만 먹고사는 데는 굶어죽기보다 낫기에 이런 일도 다행으로 생각된다. 돈 좀 벌면 한번 조선에 갔다오려고 생각한다. 돈이라도 가져 다주면 어머님과 동생들은 살 것이 아닌가. 살기만 하면 그 어느 때든 만날 날이 있겠으니.

라. 인신매매 된 후 계속되는 인권침해실태

(1) 성적인 학대, 원치않는 임신, 낙태

팔려온 북한여성난민들은 일단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사왔으므로 사람을 소유물로 대하는 것이다. 북한여성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성적인 학대다. 사람을 감금시켜 놓고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행하는 것이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한족에게 팔려갔을 경우에는 의사를 전할 수 없으므로 이런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다.

북한여성난민들의 또 다른 고통은 임신이다. 아이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식을 낳더라도 호구(공민증)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북한여성난민들이 인공유산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타국에 와서 제대로 몸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낙태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고통이다.

<난민증언 13> 성적 학대와 임신

별수 없이 그 사람 따라 갔는데 혼자 사는 신세 집세간이 말이 아니고 더럽기로 근본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집안 냄새에 구역질이나 견딜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 바쁘게 사람을 못 살게 굴었고 밤이고 낮이고 나를 재우지 않고.. 나는 하신의 아픔으로 올었으나 그 사정봐 줄 인간이 아니였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정도 못 살게 굴더니 좀 맥이 풀렸는지 밤이면 좀씩 재웠고 울타리에서 좀씩 출입시켰으나 달아날까봐 항상 대문을 안으로 채우고 있었다. 나는 하신이 너무 아파 걷지도 못할 정도니 달아날래야 달아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비인간적 생활을 몇 달하고 나니 더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런다고 막무가내로 죽을 수는 없었다. 임신되고 나니 경각성이 좀 늦춰지고 채소 사러도 가끔 보내는데 조금만 늦어도 인증 찾고는 하였다. 어느 하루 드디어 기회를 타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연길로 도망왔다.

(23세 여자 함경북도 청진시)

<난민증언 14> 낙태

다행히 나는 나보다 나이가 8년 이상인데 시집갔지만 저의 남편 되는 분은 마음씨가 착합니다. 하여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주었으며 또 시부모들도 저를 끔찍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제가 임신한지 3달이 된 것을 안 마을 부녀 주임은 호구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무조건 유산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유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돈 만원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당금 100원을 내놓아라 해도 바쁜 우리 신세 더구나 저를 사오느라고 4,000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유산해 버렸습니다.

(23세 여자 자강도 희천시)

(2) 감금과 폭행

북한여성난민들이 팔려 가는 대상은 알코올중독자, 도박꾼, 성격파탄자 등이 많다. 이들은 돈주고 사람을 사왔기 때문에 여성을 감금하고 심지어는 족쇄까지 채워놓고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화장실을 출입할 때도 감시하며 외출할 때는 밖으로 문을 잠그고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또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여성의 머리가 터지고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심한 욕설로 사람을 못 살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북한여성난민들은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공안당국의 체포로부터 좀더 안전한 이곳을 되도록 떠나지 않고 적응하고 살려 노력하지만 계속되는 폭행에 못

이겨 도망쳐서 탈출하기도 한다.

<난민증언 15> 쇠사슬로 묶고 감금한 채 성적 학대를 계속함

저는 중국에 오면 꼭 행복한 생활이 펼쳐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사람장사꾼은 저를 어느 한 중국의 이름 모를 한 산골 남자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거무덕 티하고 키는 160cm초과 못한 난쟁이를 보면 한40안팎의 중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알아듣지 못할 중국 말을 지껄이며 나를 방에 갇아놓고 자물쇠로 잠가놓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굶어서 움직일 맥도 없는 처녀인 저의 몸을 사정없이 유린하였습니다. 저는 아프고 서러워 날 샐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도망칠까봐 쇠사슬로 저의 발목을 개 기르듯이 기둥에다 매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비인간적인 생활을 반년이나 하였습니다.

(21세 여자 평안남도 대동군)

<난민증언 16> 가혹한 폭행

결혼한 후 그의 성격은 점점 조폭해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찍하면 매를 들이대고 어떤 때는 도끼를 들고 저를 죽이겠노라고 했습니다.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 날도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저에게 결고들었습니다. 내가 용대를 안 하자 남편은 또 도끼를 집어들고 찍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찍을 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불시로 저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찍었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가 다 낫자 저는 친척들보고 더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참으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고통에서 헤어져 나오면 또 다른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니. 내 운명은 왜 이리도 기구합니까?

(26세 여자 황해북도 황주군)

(3) 여러 차례 팔려 다님

인신매매로 팔려온 북한여성난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온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고 물리거나 다시 다른 곳에 되팔아 버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팔려갔다가 비인간적인 생활에 못 견뎌 어렵게 도망쳐 나오더라도 또 다른 인신매매꾼에 걸려 다시 팔려 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심지어 다섯 번을 팔려 다닌 경우도 있었다.

<난민증언 17> 다섯 번이나 팔려다님

한 식당에서 복무원질하다가 공안국에서 조사온다 하니 나를 안도 친척이라 하면서 그 집 식당에가 일하고 하였지만 사실은 식당이 아니라 나를 하얼빈 근처에다 팔아먹었다. 51세 나는 그 사람은 처 알고 혼자 사는데 무서운 도박꾼이였고 도박에 밑천 없으면 나를 미끼로 남자들에게 빚대신 몸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는 살 수 없고 기회 봐 목단강 행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서성이다가 조선족 분을 만났는데 그 이는 동녕으로 가는 길이였다. 그를 따라 동녕으로 갔고 수분하에도 갔는데 모두 팔아먹었고 기생노릇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 연길에 분 만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했는데 나의 인물 체격을 보던 것이 기회를 봐서 도망치게 하고 데려가겠다 하였다. 연길 사람 역시 장사꾼이어서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 연길에

오니 층집에 데려다 놓고 데리고 자기도 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였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옮겨 다니다니 눈물은 얼마 흘렸으며 말듣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하였고 남자 힘을 당할 수 없으니 당하고 마는 것이였다.

(26세 여자 함경북도 명천군)

(4) 성병 등에 걸림

유홍업소에 팔려와 일하는 북한여성난민의 경우는 주인한테 매매춘을 강요받는다. 주인은 그러지 않을 경우 신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그렇게 매매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고통받기도 한다.

<난민증언 18> 성병에 걸려 고생함

그 후 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복무원 일을 하였는데 차차 시일이 지나니 손님하고 한 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고 말 것이니 올며 겨자 먹기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만 성병을 얻게 되었다. 있던 돈을 주인에게 보관했는데 주인은 맡긴 돈을 절반밖에 주지 않으면서 나를 내보냈다. 나는 이 세상이 그 어디에나 이런가 하며 울었지만 방법이 없어 돈 없이 늙은 50이 넘은 중국 영감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것도 소개로 말이다. 말도 모르는 판에 모르고 데려갔으나 그 영감 역시 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무어라고 욕하면서 마구 때리더니 별 수 없는지 같이 병원에 가 보았다. 돈 좀 있는지 몇 번 데리고 다닌 것이 그만 두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 하고 때론 도망쳐 다시 조선에 가려고 해도 가도 굽어 죽을 바에는 그럭저럭 아무거나 배불리 먹고 지내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27세 여자 함경북도 온성군)

3. 매매춘

인신매매로 팔려온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인신매매와는 상관없이 소개로 유홍업소에서 일하는 북한여성난민들은 대부분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매매춘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생활에 대해 북한여성난민들은 심한 심리적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면서도 조선에 두고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참고 견뎌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난민증언 19> 매매춘을 하게 됨

저는 동생들을 역전에 두고 각 음식점을 다니면서 일자리 찾다가 마침내 개인려사에서 복무겸 청소원으로 받았습니다. 저를 크게 놀라게 한 것은 어떤 손님들은 저를 회통하고는 돈 50원씩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돈이 점점 모아지니 저의 손님 끄는 수단도 커졌습니다. 그후 공안부문에서 몇 번 수색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려관주인은 우리가 잡힐까봐 두려워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25세 여자 함경북도 명천군)

<난민증언 20> 통곡하며 매매춘을 하지만 성병까지 걸림

저는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왔다. 그 당시 소개로 연길에 있는 음식점에 복무원으로 갔는데 결국은 몸 팔고 돈 버는 기생으로 되었다. 음식점 주인은 50대였고 마누라는 활약가였다. 우리 둘은 인물 체격이 괜찮았

고 노래 또한 잘 불렀다. 술집에서 술 부어주고 같이 마셔야 하고 함께 자기도 해야 했으니 처음엔 눈물 흘리며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주인이 짜르고 나도 남자들이 주는 텁에는 수목이 적지 않았고 때로는 아버지뻘 때로는 오빠뻘 닉치는 대로 접대하였는데 어떤 이는 랭정하였지만 어떤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돈도 더 주고 갈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고마워 그후에 더 친절히 대해 주었다. 몸 팔아 집식구 살리는 형편이었다. 우리들은 때론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부모 형제 편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이 일하고 우리도 좋은 대상자 만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질 때도 있다. 그러나 꿈은 길지 않다. 동무나 나나 성병에 걸려 고통 속에서 모대길 줄이야? 우리들의 운명은 왜 이런지? 조국이 잘 살았으면 왜 타국에 몸 팔며 살아야 하는가?

(26세 여자 함경북도 온성군)

4. 노동착취

가. 북한남성난민과 북한여성난민의 노동형태

(1) 북한남성난민의 노동

북한남성난민들은 농사일, 인분수레 끌기, 가축 돌보기, 벌목공, 탄광, 건설, 채석장 등에서 일어 힘들거나 지저분하여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분 노출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일당으로 받는 경우, 6.3위안 정도이고, 월급으로 받을 경우는 220위안 정도이다. 이 금액은 중국인 통상임금의 30-50% 정도 수준이다.

(2) 북한여성난민의 노동

북한여성난민들은 식당에서 감자껍질벗기기, 채소씻기 등의 일이나 식모, 보모, 기름 짜는 일, 약초 캐기, 환자시중, 뜨개질 등을 한다. 이외에 노래방이나 술집, 여관 등 유홍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유홍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단순한 일, 즉 청소나 밥짓는 일로 시작하더라도 주인에 의해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점차로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

북한여성난민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북한남성난민보다 높게 조사되었다.¹⁴⁾ 유홍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을 할 경우에는 월 평균 245위안의 돈을 받고 유홍업소의 경우는 월 평균 363위안을 받는다. 일당으로 받는 경우는 보통 6.6위안을 받았다.

나. 노동착취

(1) 장시간, 힘든 노동

북한난민들은 중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이라 아주 적은 임금에 힘든 노동을 장시간 강요당하기도 한다. 북한난민들은 일자리를 잊게 되면 쉽게 다른 일 찾기도 어렵고, 떠

14) 이는 아마도 북한남성난민의 경우 농촌이나 광산에서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여성난민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일자리가 더 많았는데 도시의 경우 농촌이나 광산보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돌아다니게 되면 체포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에도 아무 대항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 무노임 노동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일하는 곳의 주인들은 북한난민들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공안이 수색을 온다고 거짓말하거나,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도 많다. 또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시키고 추수하면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가을이 되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난민증언 21> 공안이 수색온다고 거짓말하며 임금을 주지 않음

소개로 연길시의 한 집에 200원씩 준다고 하기에 두 달 벌어 돈 좀 쥐고 앓는 남편 살리자고 약정하고 보모질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밥 짓고 다섯 달 나는 아이까지 보는데 정말 앓을 사이조차 없었다. 그러나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두 달이 다 될 때 하루는 집주인 마누라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 수색 온다면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돈은 며칠 있다 하면서 주지 않았다. 그후 찾아가니 집은 셋집이라 써 부치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다.

(45세 여자 함경북도 회령시)

5. 체포, 강제송환과 처벌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 넘어온 북한난민들은 현재 중국에서 불법입국자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북한난민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을 발견하게 되면 체포하여 조·중 밀입국자 송환협정¹⁵⁾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송환된 북한난민들에게 엄격한 법적 제재¹⁶⁾를 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난민들은 가혹한 폭언과 구타, 고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오는 북한난민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심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월경하는 북한난민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중국에서의 체포

15) 중국이 북한난민을 체포하여 강제송환시키는 규범적 근거는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이며, 아울러 1993.11에 통과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도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성호외 4, 북한인권백서 2000, 통일연구원(2000), 136쪽 참조

16) 북한은 북한난민에 대하여 형법 47조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를 적용하거나, 형법 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공안의 수색
중국 동북부 지역 중에서 북한난민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중국 공안의 수색이 정기적으로 (보통 월 1-2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난민이나 그를 보호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공안이 언제 수색하러 올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생활을 한다. 북한난민들은 공안이 수색하려 온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하거나 집안에 마련해 놓은 비밀 장소, 산속에 있는 움막이나 동굴 등에 며칠이고 숨어 지낸다. 또한 수색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도 자주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숨어 밤을 지새기도 한다. 공안 당국의 수색 이외에도 이웃 사람의 신고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고발이 들어와서 수색을 할 때에는 북한난민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2) 체포와 벌금

일단 공안의 수색에 걸려 체포되면 북한난민들은 꼼짝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처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난민을 보호해 준 사람은 적게는 3,000위안에서 많게는 10,0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¹⁷⁾ 중국 일반 노동자의 한 달 통상 임금이 500위안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벌금액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큰 돈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선불리 북한난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주고 사온 여성까지 벌금이 두려워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

나. 강제송환 과정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난민들은 먼저 구류소나 감옥에 수용된다. 그 곳에서 일정한 수의 북한난민이 모일 때까지 1주일-1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조-중 국경 지역에 있는 삼합-회령, 도문-남양, 장백-혜산, 집안-만포 해관 등을 통해 북한으로 호송된다. 도문-남양 해관의 경우 1주일에 2회 정도, 그리고 1회에 30명-50명의 북한난민들이 이 곳을 통해 북한으로 호송되었다.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난민들은 먼저 국경 지역의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뒤 '안전부 구류장'이나 국경 지역의 '도 집결소'(함경북도의 경우 청진에 있는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그 곳에서 다시 북한난민이 살던 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졌다가 해당 지역 보위부로 넘겨져 재판과 처벌을 받는다. 북한난민이 살던 지역이 국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경우에는 그 지역 보위원이나 직장 담당 보위원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린다.

다. 북한에서의 조사와 처벌

(1) 취조과정에서의 구타, 폭언, 고문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들은 먼저 국경 지역 보위부(회령시 보위부, 온성군 보위부 등)에 넘겨져 취조를 받는다. 북한난민들은 '왜 중국에 갔는가, 중국에 얼마동안 있었는가, 중국에서 어디로 갔

17) 중국당국은 1997년 형법에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하여 북한난민을 돋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는가, 누구 누구를 만났는가' 등에 대해서 3일- 7일 동안 취조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갖은 폭언과 구타,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사람과 만난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심하게 취조 받고 고문당한다. 취조 과정에서 위낙 고문을 반다가 다리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고통을 겪는 북한난민도 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거나 부상을 당했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불구가 되는 북한난민도 있다.

(2) 몸수색과정의 인권침해

체포되어 송환되었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잡힌 북한난민들은 취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몸수색을 당한다. 돈을 보유한 북한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애써 갖게 된 돈을 뺏기지 않으려 갖은 방법으로 돈을 숨긴다. 처음에는 보통 담뱃값 속이나 신발 안에 숨겼는데 이제는 항문 속이나 신발 밑창을 뜯어 그 안에 넣기도 하며, 돈을 비닐주머니에 싸서 먹기도 하고, 북한여성난민들의 경우는 자궁 안에 숨기는 등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돈을 먹었을 경우에는 돈이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 며칠씩 짖는다.

그러나 취조하는 보위부원이나 안전원들도 북한난민들이 어떤 식으로 돈이나 재물을 숨기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한 채 가혹한 방법으로 몸수색을 하고 있다. 옷이나 소지품을 살살이 뒤지는 것은 기본이고 혐의가 있을 경우, 여성들은 자궁검사까지 하고 있으며, 일부러 밥을 먹여 용변을 보게 한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쫓아가서 뛰뛰기를 시키고 용변을 뒤지기도 한다.

<난민증언 22> 육설, 구타, 자궁검사

돈은 신바닥 밑을 도려 감추고 먹을 것 약간 준비하고 떠났다. 시간을 맞춰 강을 건너가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불시에 닥치는 경비대에 수상한 감시자로 되어 온성 안전부로 가게 되었다. 안전부에서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중국에 갔다 오는 길이지? 살도 잘 찌고 왔구나"하면서 육질하였다. 처음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였으나 옷 한켠씩 벗기면서 "이것이 그래 중국옷이 아니고 무엇인가"하면서 사정없이 때리는 풍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더러운 년 중국 남자새끼들이 그리 좋던가"하면서 잘못할 육들을 연속 퍼붓고 사정없이 때렸다. 온몸을 살살이 뒤지고 자궁에까지 무엇 감추고 왔는가 너자시켜 검사까지 하였다. 너무나 기막혀도 별 수 없이 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신은 뒤축을 보지 않고 신바닥을 껴내 보았기에 돈만은 다행히 살렸다. 5일 후 별수 없으니 내놓는데 이미 무산에다 련계하여 두 사람이 와서 데려갔다.

(32세 여자 함경북도 무산군)

(3) 처벌 및 수용기관

현재 송환된 북한난민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집으로 돌려 보내지거나,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처벌을 받는다.

① 어린이나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고 월경한 노인과 여성은 3일-7일 정도 사상 교육을 받은 뒤 집으로 돌려 보내지는데, 육설과 폭언, 가벼운 구타를 겪는다. ②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경미한 정도(체류기간이 짧고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 간 경우)의 북한남성은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3-6개월 정도 노동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③ 여러 번 국경을 넘어갔다왔거나, 유물이나 금속 등의 물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팔았거나, 중국에서 시집을 갔거나¹⁸⁾,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거나, 경미한 정도의 인신매매¹⁹⁾를 한 사람들은 교화소로 보내어져 1년-15년 정도 징역살 이를 하게 된다. ④한국 사람을 만나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

그런데, 노동단련대나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북한난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사량과 열악한 수용 환경에 따른 질병, 중노동, 고문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

IV.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북한 식량난의 해결

북한난민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내의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²⁰⁾ 북한여성난민의 인권침해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됨으로써 조-중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여성들이 생기지 않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가 무조건적으로 100만톤 이상의 대량의 식량과 의약품 및 비료, 농자재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난민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²¹⁾ 아울러 북한정부도 식량난을 초래한 체제내적인 모순들을 빨리 개혁해야만 한다. 북한정부는 식량증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집단농장제도와 주체농법을 신속히 폐지해야 하고 배급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장마당이 절대 필요하므로 장마당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대북경제 제제조치를 전면해제하고 북미수교를 해야 하며 일본정부도 북일수교

18) 북한은 중국인과 살다 강제송환된 피해여성들을 상대적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조선인의 피를 더 립했다”거나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해 조국을 배신했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구타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대안’, 북한땅에 인권의 빛을(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2000.12), 8쪽 참조

19) 북한은 실제로 인신매매 사범을 공개처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서 처형 등 중형주의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단, 중국의 경우 북한여성난민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며 대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앞의 글, 8쪽 참조

20) 이에 대하여, “이들(북한사람들)이 단지 배고픔 때문에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배고픔만 해결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들이 겪어 왔던 극한적인 삶의 체험이 이들에게 남긴 상처와 분노의 음성을 들게 되면, 그리고 이들이 조국과 친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어두운 강을 건너게 되면서 경험하는 차별과 멸시, 체포와 구타, 강제송환과 처벌의 악순환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화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이라는 “경제주의적” 사고 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방안인지 깨달을 수 있다. (중략) 탈북자 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앞의 글, 1-2쪽에서 인용)라는 주장이 있다.

21) 이에 대하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에는 탈북자는 형법 제47조에 의해 정치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정치난민’으로 규정하고, 정치범수용소내의 인권침해 등을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단체는 북한전체주의 사회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식량지원시 북한당국에 인권 문제를 조건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금순, 앞의 글, 41쪽에서 인용)라는 주장도 있다.

를 하고 일제침략배상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북한이 경제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정부에 대한 요청²²⁾

북한여성난민의 인권침해문제를 비롯하여 북한난민문제의 해결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중국정부의 입장과 태도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국으로서 중국정부가 문제해결에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정부에게 북한난민에 대한 체포와 강제송환만은 금지해달라고 요청한다. 중국정부는 조-중간에 맺어진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의해 북한난민을 강제송환한다고 하지만, 북한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정치적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경을 넘은 것이므로 범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난민은 강제송환되면 상황에 따라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고문까지 당하다가 사망하는 예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라도 중국정부는 강제송환을 반드시 중지해야만 한다.

둘째로, 중국법으로도 엄하게 처벌되는 인신매매행위가 북한여성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근절시키도록 중국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신매매된 북한여성난민들은 비인간적인 생활속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중국공안의 체포와 강제송환 때문에 늘 가슴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정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중국인남성과 사실상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면 공식적인 국제결혼으로 인정하여 합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로, 중국에는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북한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들은 떠돌아 다니다가 쉽게 인신매매되기도 하고, 특히 꽃제비 어린이들은 추운겨울에도 공사장이나 건물계단, 농촌의 논밭의 짚더미속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최소한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넷째로, 가능한 한 북한난민들을 국제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신분보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국제협약상으로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난민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온 동기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에 국제협약상 난민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의 위급상황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것이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나 자유 귀향했을 경우 북한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난민으로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양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이 있기 때-

22) 이하는 김정님, 앞의 글, 10-12쪽을 일부 수정 인용한 것이다.

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난민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식적인 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아울러 비공식적인 해결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방법의 한가지로서,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북한난민,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나 국제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정부가 묵인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3. 북한정부에 대한 요청

북한정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난민들을 조국을 배신한 자로 몰아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하여 생긴 생존권적 몸부림임을 감안하여 일체 처벌을 중지하여야 한다. 북한난민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쉽게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길이 없다는 점과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식량난을 해결하여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혁적인 노력을 함과 아울러 돌아온 북한난민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

4. 국제기구에 대한 요청

국제기구는 우선 공식적으로 북한난민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세계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해야만 한다. 특히 UNHCR은 북한난민들이 국제규범상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북한난민이 원활 경우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최소한 중국내에서 난민캠프와 같은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여타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을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한국정부와 한국민간단체에 대한 요청

한국정부는 북한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인 통로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는 북한난민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북한난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사례들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서 이 문제가 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南北韓 離散家庭

2001년 2월 17일 오후 세션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인권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 관련 법률문제

곽배희 ·

차이를 넘어서 연대 : 여성평화운동의 미래

김정수 ·

한국전쟁과 함께 북한으로 이민온 이민자들은 그들의 생활과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청탁을 남북정부에 하면서, 그들의 문제는 남북정부로 대처되는 형편이 되었다. 특히 북한에 정착한 이민자는 그들의 권리와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 광범위하게 민족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남북정부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비될 것이다.

3. 북한정부에 대처 방식

북한정부는 국적법을 통해 남북으로 편이간 북한인에게 주어진 배신자 처벌법을 두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남북으로 이민한 이민자에게는 입국허락 및 입국제한을 한다. 북한주민들이 출신지역을 단하하는 것은 정치적·민족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북한으로 올라가거나 돌아오는 이유로 한반도 내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경제·사회적 차별과 대안 부여를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이민자에게 민족을 대변하는 대신 남북을 역사적·정치적 차별을 통해 한반도 내에 주민으로 적극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1. 국제기구에 대처 방식

·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국제 정치적 차이에서 북한주민의 문제를 관리하거나 정치적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정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 민간인” 및 “1950. 6. 24.에 본 정전협정으로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명시된다. 그래서 북한주민이 출입통행 및 영락 주민으로 기록되는 주민으로서는 중국내에서 군민영민과 같은 부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율관 여타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와 의약관으로 대처의 차원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한다.

3. 관공체계의 한 차원으로서 통일 청탁

한국정부는 “한국인으로서 통일 청탁”, “한국에 나오는 이민자인 통일 청탁” 등으로 중국 정부를 격려하거나 통일 청탁이나 통일 청탁과 반대되는 북한주민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같은 차례의 실각상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은 통일 청탁이나 통일 청탁과 같은 차례는 자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통일 청탁을 네이거하면서 이 문제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통일 청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차원에서 대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南北韓 離散家族

再結合 關聯 法律問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I. 南北韓 離散家族의 概念과 現況

1. 南北韓 離散家族의 概念

가. 南北의 意義(離散地域의 制限)

- (1) 이산가족은 남북한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산지역을 ‘남북’ 즉 남북한 당국의 현실적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정 중이다. 따라서 중국, 구소련지역에 이산되어 있는 약 190만의 재중교포, 약 46만의 재 구소련 교포는 여기에서 제외

- (2) 1953년 정전협정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9조 1항은 상호귀향에 협조하여야 할 대상자로 “1950. 6. 24.에 본 정전협정으로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 민간인” 및 “1950. 6. 24.에 본 정전협정으로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명시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출입통행 및 영락 주민으로 기록되는 주민으로서는 중국내에서 군민영민과 같은 부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離散의 概念

- (1) ‘이산’이란 일반적으로 ‘해체’, ‘이별’, ‘분산’ 등 여러 가지 고통의 가중상태를 의미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됨

다. 家族의 範圍

(1) 私法上의 家族

- (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국제법상의 개념이 아닌 국내 사법상의 개념임
- (나) 남북한법상 가족의 범위는 대체로 ① 부와 처 ② 부모와 자녀 ③ 조부모와 손자녀 ④ 형제 자매로 한정되나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南北韓 離散家族 發生時期 및 그 類型

가. UN總司令官 一般命令 第1號 布告 以前(1945. 9. 2 이전)

※ 해방직후인 1945. 9. 2 UN총사령관 맥아더(D.MacArthur)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포고로 38선 확정, 남북분단

- (1) 위 일반명령 이전 38선 남북지역 또는 해외에 따로 거주하던 주민이 38선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됨에 따른 가족이산 등

나. 위 一般命令布告 以前 6.25戰爭까지(1945. 9. 2 - 1950. 6. 25)

- (1) 38선 이북 북한지역 주민이 공산정권의 강압정치를 피하여 일시 월남한 경우

- (2) 38선 경계 감시 소홀한 시기에 비공식적으로 월남, 월북한 경우 등

다. 6.25 戰爭以後 休戰協定까지(1950. 6. 25 - 1953. 7. 27)

※ 1953. 7. 27 UN총사령관과 북괴군 최고사령간 및 중공군 최고 사령관간에 휴전 협정체결

- (1) 전쟁기간 중 긴급피난으로 가족중 일부만 월남한 경우
- (2) 북한군에 의해 의용군 등으로 끌려가거나 저명인사로서 강제 납북된 경우 등

라. 休戰協定以後 現在까지 (1953. 7. 27 - 현재)

- (1) 38선으로부터 휴전선으로 분단선 변경으로 인한 경우

- (2) 스스로 직접 또는 제3국을 거쳐 월남, 월북한 경우

- (3) 대한항공(KAL)기 납북 등 북한측이 국내외에서 강제납치 후 송환하지 아니한 경우

- (4) 북한측에 의해 재일교포의 북송으로 인한 경우 등

3. 南北韓 離散家族 現況

- (1) 통칭 1천만 이산가족

- 8.15 해방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남한으로 온 월남자는 5백여만명

- 북한이산가족을 동일수로 보아 통칭 1천만 이산가족이라 함

<표1> 월남자 가족 출신도별 통계

(단위 : 명)

출신도별	황 해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경기, 강원	합 계
인 원 수	1,879,000	1,513,000	1,160,000	1,660,000	822,000	640,000	7,674,000

『1995 현황』, (이북 5도청)

※ 월남자 및 그 가족의 수로서, 월남 이후 자연인구증가율을 감안한 추정인구임

- (2) 정부통계자료에 의한 이산가족수

- 90. 11. 1.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북한출신(북한에서 출생한 인구)은 417,632명

<표2> 남한거주 북한출신 출신도별 통계

(단위 : 명)

출신도별	황 해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경기, 강원	합 계
인 원 수	139,850	75,621	57,068	66,632	22,529	55,932	417,632

『1990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 전수집계 결과』, (92.12 통계청)

(3) 이산가족수는 그 범위확정에 따라 변동되며, 정부내 정확한 자료 없음

II. 南北韓 離散家族의 法的 現況

1. 關聯法律 概觀

가. 南韓

- (1) 민법 (1958. 2. 22 제정, 1990. 1. 13. 제7차 개정)

- 총 5편 32장 1118조,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구성

- (2)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1. 16. 제정, 1968. 3. 18. 제1차 개정)

- (3) 호적법(1960. 1. 1. 제정, 1990. 12. 31. 제7차 개정)

- 총 8장 143조, 총칙, 호적부, 호적의 기재, 신고, 호적의 정정, 불복절차, 벌칙,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

나. 北韓

- (1) 민법 (1990. 9. 5 제정)

- 총 4편 13장 271조, 일반제도, 소유권제도, 채권채무제도,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등으로 구성

- (2) 가족법 (1990. 10. 24 제정)

- 총 6장 54조, 가족법의 기본, 결혼, 가정, 후견, 제재 등으로 구성

(3) 호적제도 부재

2. 离散家族의 法的 規律狀態

가. 南韓의 境遇

(1) 북한 이산가족에 대한 신분정리

(가) 실종·잔류·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

·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실종선고

(나) 미수복지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직한 자가 그 취직 당시에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신고를 누락하여 호적상 미수복지구에 가족이 없는 자로 되어 있어 가호적이 부진정한 경우도 있음

(2) 남한 이산가족의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가) 실종·부재선고로 인한 호주 및 재산상속 개시

(나) 실종·부재선고 후 남한 이산가족의 혼인·출생·입양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부부·친족관계 형성

(다) 실종·부재선고 후 남한 이산가족의 재산법률행위로 인한 새로운 재산관계발생

나. 北韓의 境遇

(1) 남한 이산가족에 대한 신분정리

(가) 월남자 등에 대한 사망자 인정

(2) 북한 이산가족의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가) 사망자인정으로 인한 재산상속 개시

(나) 사망자인정 후 북한 이산가족의 혼인·출생·입양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부부·친족관계 형성

(다) 사망자인정 후 북한 이산가족의 재산법률행위로 인한 새로운 재산관계 발생

(3) 이산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재혼(사실혼 포함)하였을 경우 남북관계에서는 일단 선의로 해석되나, 재결합 이후 재산문제와 결부된 소송제기 다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고 재결합 가족간의 감정악화 및 가정안정훼손, 국가의 사법·행정력의 과다소모 등이 우려됨

(4)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장자 호주승계 관습과 법적 규율과의 괴리현상 발생 및 당사자 반발 가능성

(5) 재산상속과 관련, 제척기간 또는 단기소멸시효기간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1년, 10년) 회복불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문제, 현존이익의 반환범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당사자간 분쟁 및 이로 인한 국가사법·행정력 과다 소모 우려

III. 法令整備方案

1. 立法的 補完

가. 既存關係法令 중 該當部分의 改正

(1) 통일이 된 후 통일방식에 따라 기존법령의 전 체제를 그에 맞춰 개편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거시적 접근 필요)

(2) 통일이전의 경우 즉 화해협력의 단계에서의 통일 이후 남북한 법의 완전 통합에 앞서서 남북한 이산 가족의 자유왕래 (상대방지역에서의 거주), 재결합에서 나타나는 법률문제는 그 성격 상 한시적, 잠정적 성격, 기존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문제 해결 시 많은 예외 규정 필요

(3) 기존 관계 법령의 일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법이론에 어긋나는 상당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또한 기존관계법령의 보완방법을 취할 경우 법령 상호간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나. 限時的, 感情的 性格의 特別法制定

(1) 특별법 제정 시 고려사항

(가) 특별법의 범위 - 즉 규율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

① 남북한 이산가족의 왕래와 재결합만으로 관련사항 제한

② 남북한 주민 관계 전반을 관련사항으로 할 것인가 여부

ex) 대만의 경우 ; 양안관계조례

*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시 이에 수반되는 법률문제 중 그 시급성과 현실성에 비추어 가족법상의 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남북이산가족문제만을 다루는 특별법제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과 이산가족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남북한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생각할 때 이산가족재결합 관련사항을 포함한 남북한 주민관계전반을 다루는 특별법제정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다. 再結合 關聯事項 規律 時 基本原則

(1) 기존의 가족, 신분관계 존중

이산 이전, 이후 북한지역의 북한가족법에 근거하여 형성·해소된 가족, 신분관계 내지는 판결, 판결에 준하는 법적 문서의 유효성 인정해야 함.

다만 이 경우 헌법상 영토조항¹⁾에 반한다는 논리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1) 宪法 第3條 (領土)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大判 1961. 9. 28 -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2) 당사자 의사 최대한 존중

이산이후 형성되고 그 적법성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가족, 신분관계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존중.

ex) ① 이산이후 새로 형성된 기존의 가족, 신분관계 해소 후 재결합 원하는 당사자 의사 무시하지 말아야 함.

②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취소의 효과로 법률상 재결합 원치 않는 당사자 의사 무시하지 말아야 함.

(3)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배려
기존의 가족, 신분관계 보호의 원칙만 고집하게되면 이산 이전의 배우자 보호배제경우가 발생. 결과적으로는 일부일처제 가족법의 기본원칙, 사회질서에 대해 잠정적, 일시적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임.

(4) 상속(재산)권 보호

일정한 제한은 필요.

이산이후, 재결합 이전에 개시된 상속질서 보호해야 할 것임.

(가) 상속법리상 북한거주 상속인의 상속권 인정.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되나 민족분단으로 인한 예외를 인정해야 함.

(나) 사망으로 처리된 월북자의 경우 이미 상속 처리되어 진 자기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외 북한거주 상속인의 남한소재 부동산 물권취득 내지는 기타 재산의 북한으로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 필요(제한 여부에 대해)

IV. 北韓 家族法

1. 立法 背景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결정 제5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제정 (이하 북한 가족법)

(1) 북한 가족법 제정 전까지는 가족법 관계를 헌법과 민사규정상의 몇가지 조문 그리고 가족법 관련 개별법령들을 통해서 규율

(2) 북한 가족법 제1조는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족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가족법에서 명시한 남녀평등의 원칙,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원

칙, 일부일처제 원칙, 자녀의 이익에 치중한 친권실현의 원칙 등 네가지 원칙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집단주의 원칙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채택함에 따라 자녀의 이익을 위한 친권실현의 원칙은 개인·국가의 이익과, 가정·사회적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으로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등장하게 됨

북한 가족법은 결혼, 이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입양, 상속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의 원칙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규정²⁾

2. 主要 内容

총6장 54조로 규정된 북한가족법은 ‘가족법의 기본’에서 시작하여 ‘결혼’, ‘가정’, ‘후견’, ‘상속’, ‘제재’ 등을 규정.

(1) 특히 북한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결혼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는 남녀평등의 원칙, 상호존경과 공동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규정

(2) 혈연관계

(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을 통해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를 확고히하고 자녀를 적극적인 새 사회 건설자로, 집단적이익을 존중하는 애국자로 교양할 수 있도록 가족의 공고화를 도모

(나) 혈족의 범위

개별적으로 별도추정 (가족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남한가족법보다 그 범위 축소, 결혼금지, 부양, 상속 등 효과발생

(다) 인척범위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로 부양의무, 상속권발생. 그러나 북한 가족법에서도 부계혈연적 대가족주의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다른 사회주의 가족법에 비해 폭넓게 규정 (제10조, 제37조제1항, 제46조제3항 등)

(3) 양육관계

입양, 파양에 관한 제규정

(4) 상속관계

초기 가족법에서는 가족법대상에서 제외

2) 北韓家族法

第6條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특별보호

第8條 자유결혼의 권리보장과 일부일처제원칙 명시

第11條 第2項 사실혼 금지

第18條 가정생활에서의 부부평등

第26條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는 부성추정의 원칙과 성불변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의 전통적 가족제도의식에 따른 것이며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

1990년도 가족법에서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규범화하고 상속관계를 공고화하는 수단이라하여 가족법의 대상으로 명시
북한사회에 기증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화는 북한사회의 혁명화와 주체사상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 따라서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방편

※ 1993년 9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북한가족법 일부개정, 개정된 조문은 제23 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2항, 제6항 표제를 법칙에서 제재로 변경

위 개정된 조문 중 제52조는 법조문 표현의 변경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규정내용을
변경, 그 외 다른 조문은 그 기본적 내용의 변경이 아닌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정도
의 변경이라 할 수 있음.

참고 문헌

1. 신영호, 남북한 이산가족의 왕래 및 재결합에 관한 법령정비방안, 고려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34집 별책 (1998)
2.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3. 장명봉, 북한현법50년, 북한법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1999)
4. 최달곤, 북한혼인법, 고대출판부 (1977)
5.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6. 통일법무기본자료, 법무부 법무자료 232집
7.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1990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북한 가족법)”

(1) 북한 가족법 개정 조치
관련 개별법령들을 통하여

가족법 제1조는 “가족법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 가족의 존엄성, 가족의 존속과 존망, 가족의 존망을 보호하는 바를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로 되어 있다. 가족법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 가족의 존엄성, 가족의 존속과 존망을 보호하는 바를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이다. 가족법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 가족의 존엄성, 가족의 존속과 존망을 보호하는 바를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이다.

‘차이’를 넘어서 ‘연대’ :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사랑의 감정이란 둘 됨으로 이루어진다. 그 둘됨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내에서 벗어나는 것과의 관계다. 사실상 관계란, 타자성을 없애 중립화하지 않고 타자성을 보존한다. 상대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거나 우리가 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신비 속으로 숨는다.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가운데서, 「윤리와 무한」에서 인용)

두 꼬레의 앵돌레랑스에 관해 말하자면, 앵돌레랑스는 아주 흔히, 형제 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폴레랑스를 보입니다. (필리프 사시에, 왜 폴레랑스인가, 가운데서)

1. ‘차이’와 ‘다름’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요사이 평화·통일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거 80년대 중순 이후 통일운동이 시작되던 초기기 ‘어떤 통일도 선이다’라고 했던 때와 달리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치적 차원의 제도적 통일논의가 그 주를 이루어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에 관한 통일방안을 둘러싼 논쟁,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 여기서 연장된 동일성과 이질성 논의를 통해 얻어진 잠정적 결론,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확대’의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일논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 ‘사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서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수용하여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통일관련 글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과제로 제시되는 이 ‘차이의 수용과 다름의 인정을 통한 공존’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평화·통일운동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말이 계속 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평화, 통일운동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이를 수용 혹은 극복하고 이질성·다름을 인정하여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더 진전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를 위해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시론적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¹⁾

1-1.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내는 ‘타자화’의 방식들

1. 이번 인권회의에서는 여성평화운동의 주제가 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차이를 넘어서 연대’라는 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글로는 정현백, ‘한국여성통일 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제1호 (2000), 이현숙, ‘여성과 평화운동’, 21세기 평화운동과 여성 (평화교육 자료집), 평화를만드는여성회(1999) 등을 참조하라.

우리가 최근 들어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과 공존문제를 다루거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면서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고 이질성을 포용하여 관용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차이'가 있는 그대로의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별'을 만들어 내는 논리에 이용되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문제에서 보듯이, 동일하지 않는 권력관계에서 차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쉽게 전환된다.

가톨릭 신학자 로버트 슈라이터(R. Schreiter)에 의하면 어떤 사람/집단을 '타자화'하여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7 가지를 들었는데²⁾, 이를 통해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내면화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악마화'(demonize)한다. 어떤 대상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미국정부와 언론이 사담 후세인이나 쿠바의 카스트로를 세계의 평화질서를 해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이나, '람보'라는 영화를 통해 잔인한 살인마로 등장한 수많은 표정없는 베트남 군인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악마화하던 남한의 보수언론의 반공·반북 멘탈리티가 대표적인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적이미지나 원수상을 생산해 냄으로써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다. 지난해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한사회에 던져준 가장 큰 충격은 이른바 '김정일 신드롬'인데, 그 핵심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한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사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진 효과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적대감을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았을가를 깨닫고, 적대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차별과 적대감·원수상을 재생산해온 남한사회의 지배권력과 언론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낭만화(romanticize)·신비화(mystify)한다. 어떤 대상을 실제 이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차별과 착취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구 제국들의 식민지 개척이 후 인류학자들이 비서구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culture라고 부르기 보다는 '민속'folk이라 부르면서 낭만화, 신비화한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지구화 물결 속에서 상업주의와 결부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을 신비화하면서 매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북한을 다녀온 일부 남성들 역시 북한을 여성으로 객체화 하고, 북한여성을 우리 민족의 본래적 순수성을 가진 원형으로 낭만화·신비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³⁾ 이를 통해 북한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서 요구되는 여성적 미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찬양하고, 남과 북이 회복해야 할 미덕으로, 간접적으로 남한여성들 전통적 역할로 복귀할 것을 암시함으로써 남성/여성의 차별적 성별분할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식민화(colonize)한다. 어떤 대상을 실제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동정 혹은 경멸, 착취, 정복의 대상으로 만든 기제이다.

넷째, 일반화(generalize)한다. 어떤 대상을 비개인화시켜 개인적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

2. Schreiter, Robert.,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ging Social Order, Orbis Press, Maryknoll, NY, (1989), 52쪽 이하. Resource Guide Book for a Workshop on "More to Peace than Justice: Practice and Faith of Christian Peacemaking, (March 1999, Maryknoll, NY)에서 재인용.

3. 전효관, '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 구성', 조한혜정·이우영 역,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2000, 103-107쪽.

예를 들어 '흑인은 백인에 비해 열등하다, 스포츠와 예술에 능하다'라든지, '일본인은 경제적 동물이다'라든지, 한국의 유별난 지방색 등은 바로 일반화의 대표적 특징이다. 개인, 개별 집단의 개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모든 개인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다섯째, 평범화 혹은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trivialize). 무감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sexual harrassment)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으로, 여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난리친다'라고 무시하는 반응, 장애인 문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아 사회적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하지 않는 것 등도 해당된다. 보이지 않고 말해지지 않은 것, 이름 없는 것에 대한 '명명'(naming)이 권력관계에 의해 은폐된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여섯째, 동질화·균질화(homogenize)한다. 어떤 집단 내에 다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한 민족,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주의 언설에서 나타난다. 동질화가 선전되고 강화되는 사회에서 이질적인 것은 폭력적인 배척과 차별과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일곱째, 증발시킨다(vaporize). 어떤 대상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남한에는 양심적 군복무거부자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다"⁴⁾ "남한에는 북파공작원이 없다" 혹은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정부가 해외 주둔지에 배치한 핵무기 핵미사일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핵정책 역시 핵문제의 심각성을 증발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같은 부인 속에서 소수자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된다.

이 외에도 '타자화'의 방식은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 대상화, 차별화의 과정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다양한 차원의 관계 속에서의 행동양태, 의사소통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만들어진 차이와 다름이 교정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권되기 위해서는 타자화의 주체들에 의한 '자기비판'과 '성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유성, 차이, 특수성, 개별성, 타자성 등을 드러내는 것은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성취되는 '인간화'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된 '얼굴'을 드러내고 그 다양한 얼굴의 모습과 표정에 대해서 책임지고⁵⁾ 배려하는 것이 바로 연대하는 길이다.

2. 여성평화운동에서 경험한 차이와 다름의 문제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은 '통일'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통일은 여성평화운동의 일부이면서도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차이'와 '다름'의 문제는 여성평화운동 위한 평화교육의 중심주제/과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남북여성교류 등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둘째는 남한사회의 가부장적 군사주의 문화의 횡일성과 폭력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이다.

4. 신윤동욱, '묻혀져왔던 '여호와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한겨레21, 345호, (2001.2.15), 28쪽.

5. Emmanuel Levinas, Ethique et Infini, (윤리와 무한, 양명수 옮김), 다산글방, (2000), 109-119쪽.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적 책임성을 읽는다. 그 책임성은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한 책임성처럼 보이지만 나와 관계있고, 내게 얼굴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한다.